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감찰팀
- 전화상담: TEL. (02)2110-8045 FAX. (02)504-9146

건설 신기술 매뉴얼

2012 · 10

국토해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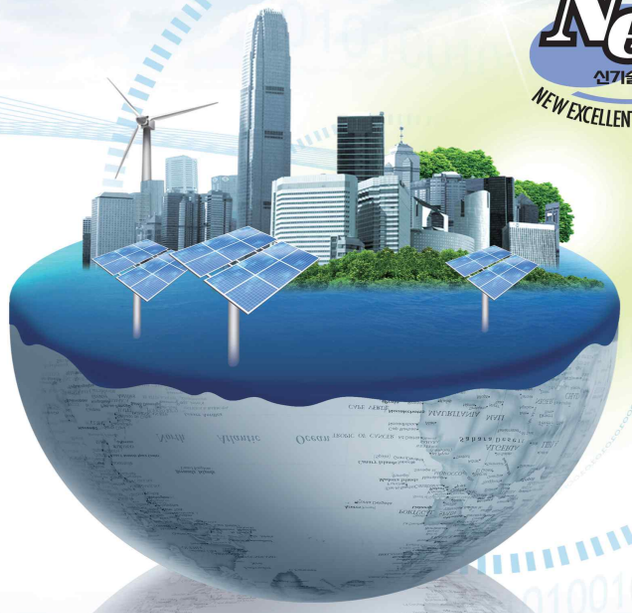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1000-002416-01

http://www.mltm.go.kr

건설 신기술 매뉴얼

2012. 10

NET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국토해양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1000-002416-01

건설신기술 매뉴얼



2012. 10

국 토 해 양 부

[건설신기술정보마당]

○ 웹사이트 주소: http://ct.kictep.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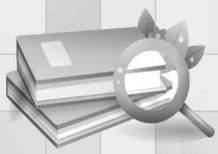
○ 사이트 운영: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 주요 서비스

- 신기술 제도안내, 의견청취, 신기술 검색, 활용실적, 사후평가 등



목 차



1.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 1

가. 제도 개요 ····· 3

1) 목적 ····· 3

2) 관련법규 ····· 3

3) 신기술지정 대상 ····· 3

4) 신기술업무 처리기관 및 역할 ····· 7

5) 심사절차 ····· 7

6) 심사 기준 ····· 8

7) 보호기간 ····· 8

8) 처리기간 ····· 12

9) 신기술 자료관리 ····· 12

10) 제도변천 주요내용 ····· 13

나. 신기술 지정 ····· 14

1) 지정심사 처리절차 ····· 14

2) 신청자격 ····· 15

3) 제출서류 ····· 15

4) 신청서 접수 절차 ····· 16

5) 신기술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 17

6) 선행건설기술 조사 ····· 17

7) 원가계산 조사 ····· 18

8)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8

9)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19

10) 1차심사위원회 ····· 20

11) 현장실사 ····· 21
12) 품질검사 ····· 21
13) 2차심사위원회 ····· 22
14) 신기술심사위원회 회의순서 및 신청인 준비사항 ····· 23
15) 신기술 홍보용 자료 등록 관리 ····· 25
16) 지정 및 고시 ····· 26
17) 신기술지정 취소 ····· 26
18) 영문지정증서 초안 제출 ····· 26
19)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 26
20) 시방서 등 변경금지 ····· 27

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28
1) 보호기간 연장심사 처리절차 ····· 28
2) 신청기간 ····· 29
3) 제출서류 ····· 29
4) 1차심사위원회 ····· 29
5) 2차심사위원회 ····· 29

라.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 31
1) 기술사용료 및 인증마크 ····· 31
2) 신기술의 활용지원 ····· 33
3) PQ점수부여 ····· 35
4)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 보상 ····· 36

마. 신기술 부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 37
1)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위반시 제재 ····· 37
2) 청탁 등 부정행위와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 37
3) 신기술 신청서 임의공개에 대한 제재 ····· 37
4) 신기술 부당거부행위에 대한 제재 ····· 37
5) 심사위원의 청렴의무 ····· 38

2. 신기술신청서 작성요령 ····· 41

가. 신기술지정신청서 ····· 41

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 69

3.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 자료 작성요령 ····· 98

가. 신기술 요약자료 ····· 91

나. 신기술 홍보용 자료 ····· 91

4.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 ····· 39

가.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등 ····· 95

1) 건설기술관리법(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 95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 97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 102
4)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106
5)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 130
6)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 133
7) 기타 신기술 관련 법규 ····· 136

나. 질의회신 ····· 141

1)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 141
2) 기술사용료 ····· 142
3)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 ····· 144
4) 신기술 사용 협약 ····· 148
5) 입찰 및 계약관련 ····· 149
6) 신기술의 명의변경 및 양도 ····· 150
7) 신기술 지정 취소 ····· 151
8) 신기술 범위 해석 ····· 152
9) 기타 ····· 154

5. 관련서식 ····· 159

□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기술지정신청서 ····· 161
□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 ····· 162
□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재발급신청서 ····· 163
□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기술활용실적 ····· 164
□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기술활용실적증명(신청)서 ····· 165
□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 166
□ [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의견서 ····· 167
□ [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 168
□ [평가규정 별지 제6호서식] 1차심사평가서(지정) ····· 169
□ [평가규정 별지 제8호서식] 현장실사의견서(지정) ····· 172
□ [평가규정 별지 제9호서식] 2차심사평가서(지정) ····· 176
□ [평가규정 별지 제10호서식] 2차심사평가서(연장) ····· 178
□ [평가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각서(이해관계인) ····· 180
□ [평가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재발급용) ····· 181
□ [매뉴얼 제2호서식]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 182
□ [매뉴얼 제3호서식]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 184
□ [매뉴얼 제5호서식] 홍보용 책자 ····· 186
□ [매뉴얼 제6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 194
□ [매뉴얼 제7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 195
□ [매뉴얼 제8호서식] 신기술 요약자료 ····· 196
□ [매뉴얼 제9호서식] 원가계산서 ····· 199
□ [매뉴얼 제10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 200
□ [매뉴얼 제1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내역서 ····· 201
□ [매뉴얼 제12호서식]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202
□ [매뉴얼 제13호서식] 삭제 ····· 203
□ [매뉴얼 제14호서식] 건설신기술 예산절감 현황(공사별) ····· 204
□ [매뉴얼 제15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대책 ····· 205
□ [매뉴얼 제16호서식] 건설신기술 영문지정증서 ····· 206
□ [매뉴얼 제17호서식] 활용실적 서약서(신청인) ····· 207

6. 신기술유사기술분류표('12. 9. 28 기준) 19

7. 신기술관련 담당부서 안내 25

1.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가. 제도 개요

나. 신기술 지정

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라.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마. 신기술 부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1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가. 제도 개요

1) 목 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2)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내지 제45조, 제129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20조, 제32조 제1항제5호, 제78조, 별표 18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46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746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747호)

3) 신기술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함.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 포함)·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그 밖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건설공사의 정의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건설신기술 지정분야

대분야	중 분 야	소 분 야	비고
A 토목	01. 도로	01. 도로 구조 설계 02.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03.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04. 도로기층 05. 교면포장 06. 도로안전시설 07. 방음벽 08. 도로 경계석 09. 맨홀 10. 기타 도로 시설	
	02. 철도	01. 철도궤도 설계 02. 궤도 03. 철도시스템운영 04. 신호 및 제어 05. 철도 유지보수보강 06. 철도 차량 07. 기타 철도시설	
	03. 항만 및 해안	01. 준설 및 매립 02. 항만 및 해안 구조물 03. 수중 구조물 04. 항만 부속 시설 05.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06. 방파제 07. 기타 항만 및 해안 시설	
	04. 상·하수도	01. 관로 설계 및 프로그램 02.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03.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04. 상수 처리 05. 하수 처리 06. 상하수도 오니준설 07. 기타 상하수도 시설	
	05. 수자원	01.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02. 호안조성 03. 댐 04. 보 05. 하천 수질 정화 시설 06. 지하수 및 관리 07. 기타	
	06. 교량	01. 교량 설계 및 구조 02. 교량 상부구조물 03. 교량받침 04. 교량거더 05. 가설시설물 06. 교량 부속 시설물 07. 교량 유지보수 08. 기타 교량시설	
	07. 터널	01. 터널 구조 및 설계 02. 터널 구조물 설치 03. 터널 보강 안정 04. 터널 굴착(발파) 05. 터널방수 06. 터널 유지보수 07. 터널환기시설 08. 기타 터널시설	
	08. 토질 및 기초	01.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02. 지반 개량 및 보강 03. 지반 굴착 04. 말뚝(Pile) 05. 토목 지중 구조물 06. 흙물막이공 07. 사면 관리 및 보강 08.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09. 기타 토질 및 기초 시설	
	09. 조경	01. 사면녹화 02. 식재조성 03. 수목지지 04. 기타 조경시설	
	10. 측량	01 수치지도 02. 하천측량 03. 기타 측량	
	11.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01.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2. 방식 03.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대분야	중 분 야	소 분 야	비고
B 건축	01. 건축계획 및 관리	01. 설계 및 프로그램 02. 기타 건축계획	
	02. 가설시설물	01. 안전가시설 02. 기타 가설물	
	03. 조경	01. 옥상녹화 02. 기타 조경	
	04. 기초	01. 기초다짐 및 지정 02. 기초 보강 03. 기타 기초	
	05. 철근콘크리트	01. 콘크리트 제조 타설 02. 철근 가공 및 조립 03. 거푸집 04. 철근콘크리트 골조 05. 복합 구조체 05. PC(Precast Concrete) 06. 기타 철근콘크리트	
	06. 철골	01. 철골 가공 및 조립 02. 데크플레이트 03. 철골 내화 피복뿜칠, 방식 04. 복합 구조체 05. 철골계단 06. 기타 철골	
	07. 조적	01. 벽돌 02. 블록 03. 기타 조적	
	08. 마감	01. 석공 02. 타일 03. 목공 04. 금속 05. 유리 06. 지붕홈통 07. 미장 08. 창호 09. 도장 10. 수장 11. 단열 12. 건축물세척 13. 기타 마감	
	09. 방수	01. 일반방수 02. 복합방수 03.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10. 특수 건축물	01. 초고층 건축물 02. 쉘, 돔, 아치형 구조물 03. 비정형 구조물 04. 복합구조물 05. 내진구조물 06. 친환경 건축물 07. 기타 특수 구조물	
	11. 해체	01. 발파식 해체 02. 기계식 해체 03. 기타 해체	
	12. 보수보강	01. 건축 보수보강 02.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03. 기타 보수보강	
C 기계설비	01. 건축기계	01. 건축기계설비 02. 공기조화/냉난방설비 03. 소방설비 04. 배관설비 05. 파쇄설비 06. 순환골재 제조설비	
	02. 플랜트	01. 신산업플랜트설비 02. 복합플랜트설비 03. 기타 플랜트	
	03.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01. 계측 및 제어설비 02. 자동화 시스템설비 03. 기타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04. 환경기계설비	01. 환경기계설비 02. 폐기물처리설비 03. 기타 환경기계설비	

※ 안전시설, 방음벽 등 일부 도로분야와 철도분야는 교통신기술 신청 가능

※ 상수처리, 하수처리 등 일부 상하수도 및 수자원 분야는 환경신기술 신청 가능

4) 신기술업무 처리기관 및 역할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신기술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 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사후평가 결과 관리	- 신기술신청 접수·반려 - 신기술 심사 - 신기술 의견조회 - 신기술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신기술 등록·관리	-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5) 심사절차

○ 지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재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6) 심사 기준

가) 지정심사 기준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나) 보호기간 연장심사 기준

○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정도 등이 인정되는 기술

○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 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은 가점 부여

7) 보호기간

○ 신기술 최초 지정시 5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2010. 12. 13. 건기법 시행령 개정, 3년 → 5년),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시 연장심사를 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정하고 3~7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 보호기간 연장 기간의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종합평가점수	90이상 ~100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40이상 ~60미만
등 급	가	나	다	라	마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 점수로 등급 결정, 종합점수 40점 미만은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배점기준	배점
활용실적 (30)	활용건수 및 공사비	신기술 활용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30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	국내·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15
	품질검증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 등 품질검증 결과	15
	경제성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원가절감효과가 뚜렷하거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15
	시장성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5
	안전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10
	기술개량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배점	5
	권고사항 이행여부	지정시 권고사항 이행 여부	5
가점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에 따라 부여	(10)
종합점수			100

※ 종합평가점수가 가점포함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까지만 인정

① 활용실적 및 기술의 우수성

- 활용실적(30점)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①활용건수	3 이하	4 ~ 15	16 ~ 60	61 ~ 150	151 이상
②공사비(억원)	3 이하	3 ~ 25	25 ~ 120	120 ~ 300	300 초과
배점한도	0 ~ 6	7 ~ 12	13 ~ 18	19 ~ 24	25 ~ 30

※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배점한도를 채택

- 기술의 우수성(70점)

항 목	배점기준	점수
기술수준 (15점)	선진외국기술(100%기준)을 능가하는 수준	15
	선진외국기술(100%기준)과 동등하여 수입대체가 가능한 수준	12
	국내 기존기술보다 10% 이상 우수한 수준	9
	국내 기존기술과 동등한 수준	6
	국내 기존기술보다 미흡한 수준	3
품질검증 (15점)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15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개선	12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검증 완료	9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미달	6
	신기술 지정 이후 품질검증 미실시 또는 자료 없음	3
경제성 (15점)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30% 이상 높음	15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20% 이상 높음	12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10% 이상 높음	9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유사	6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미흡	3
시장성 (5점)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30% 이상 높음	5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20% 이상 높음	4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10% 이상 높음	3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과 유사	2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미흡	1
안전성 (10점)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30% 이상 높음	10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20% 이상 높음	8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10% 이상 높음	6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유사	4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미흡	2

항 목	배점기준	점수
기술개량 (5점)	지정시 대비 30% 이상 개량개선	5
	지정시 대비 30% 이내에서 개량개선	4
	지정시 대비 20% 이내에서 개량개선	3
	지정시 대비 10% 이내에서 개량개선	2
	지정시 대비 개량개선되지 않음	1
권고사항 이행여부 (5점)	권고사항 이행	5
	권고사항 미이행	0

※ 권고사항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② 가점

- 사후평가결과(5점)

배 점						
사후평가결과	100~105점 미만	105~115점 미만	115~120점 미만	120~125점 미만	125~130점 미만	130점 이상
배점	0	1	2	3	4	5

- 해외활용실적(3점)

해외활용건수	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 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만$ 미만	500~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배 점	1	2	3

※ 해외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점수를 반영

- 기술보급노력(2점)

홍보실적	5건 미만	5~15건 미만	15건 이상
배점	0	1	2

※ 정부, 지자체의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 증빙이 있는 경우

- 활용실적 누락 및 미제출 금액에 따른 보호기간 단축 조정 기준

금액	100억 미만	100억~ 200억 미만	200억~ 400억 미만	400억~ 600억 미만	600억 이상
단축기간	0.5년	1년	1.5년	2년	3년

8) 처리기간

○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 심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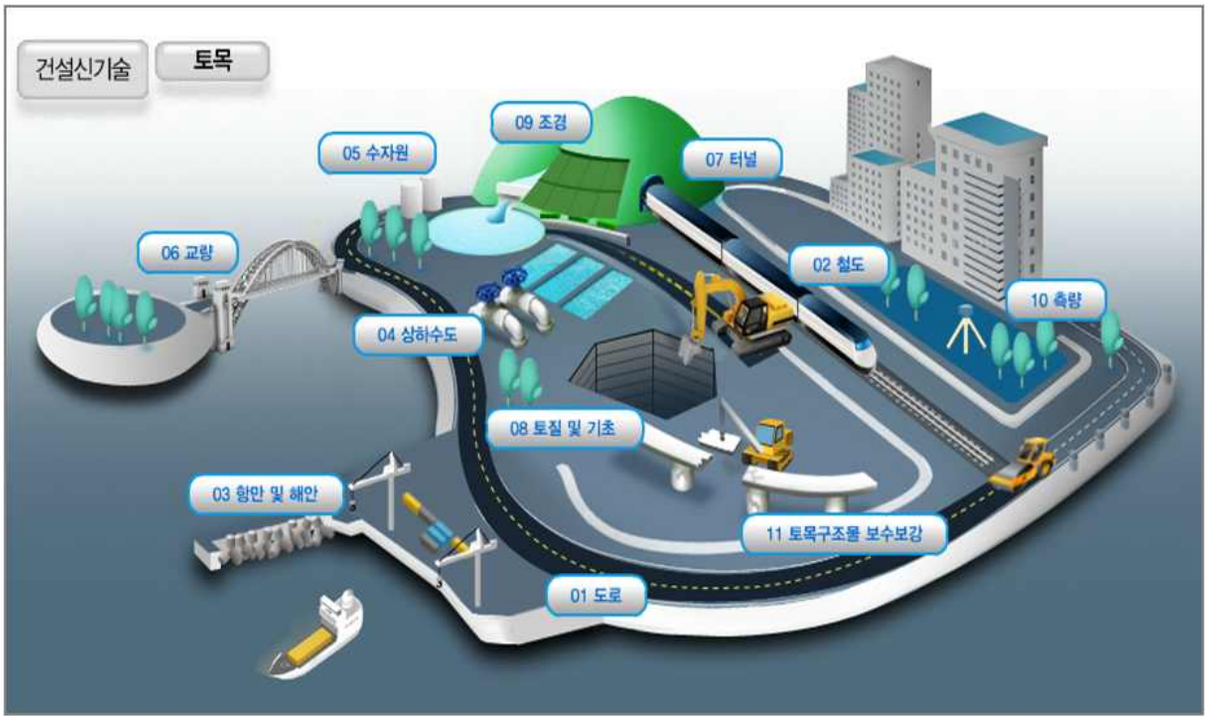
○ 다만,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 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9) 신기술 자료관리

신청인은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 심사 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신기술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 요약자료 등 홍보용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정보마당과 건설신기술 사이버전시관에 자료 등록

○ **건설신기술 사이버전시관**

- 건설신기술 정보에 대한 다양성, 객관성, 적시성 증대를 통한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구축하여 신기술관련 자료를 제공



10) 제도 변천 주요 내용

○ '89. 5. 1 : 제도 운영(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반영)

○ '95. 8. 4 : 신기술 보호기간 변경(2~5년 ⇒ 5~10년)

○ '96. 4. 1 : 신기술 심사업무 위탁(KICT)

○ '99.10.30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도 도입(최초 3년, 연장 7년)

○ '02. 1.15 : 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 위탁(신기술협회)

○ '03. 6. 2 : 신기술 심사업무 위탁기관 변경(KICT→KICTEP)
선행기술조사제도 도입

○ '05. 7. 1 : 예비심사제도 폐지 → 1차 및 2차 심사로 이원화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간소화(1차 심사 ⇒ 서면평가)

○ '06. 7.11 : 신기술 지정신청서 구비서류로 원가계산서 추가

○ '07. 3.16 :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간소화(1차 심사 면제)

○ '08. 4.28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로 원가계산서 추가

○ '10.12.13 : 신기술 최초 보호기간 변경(3년 ⇒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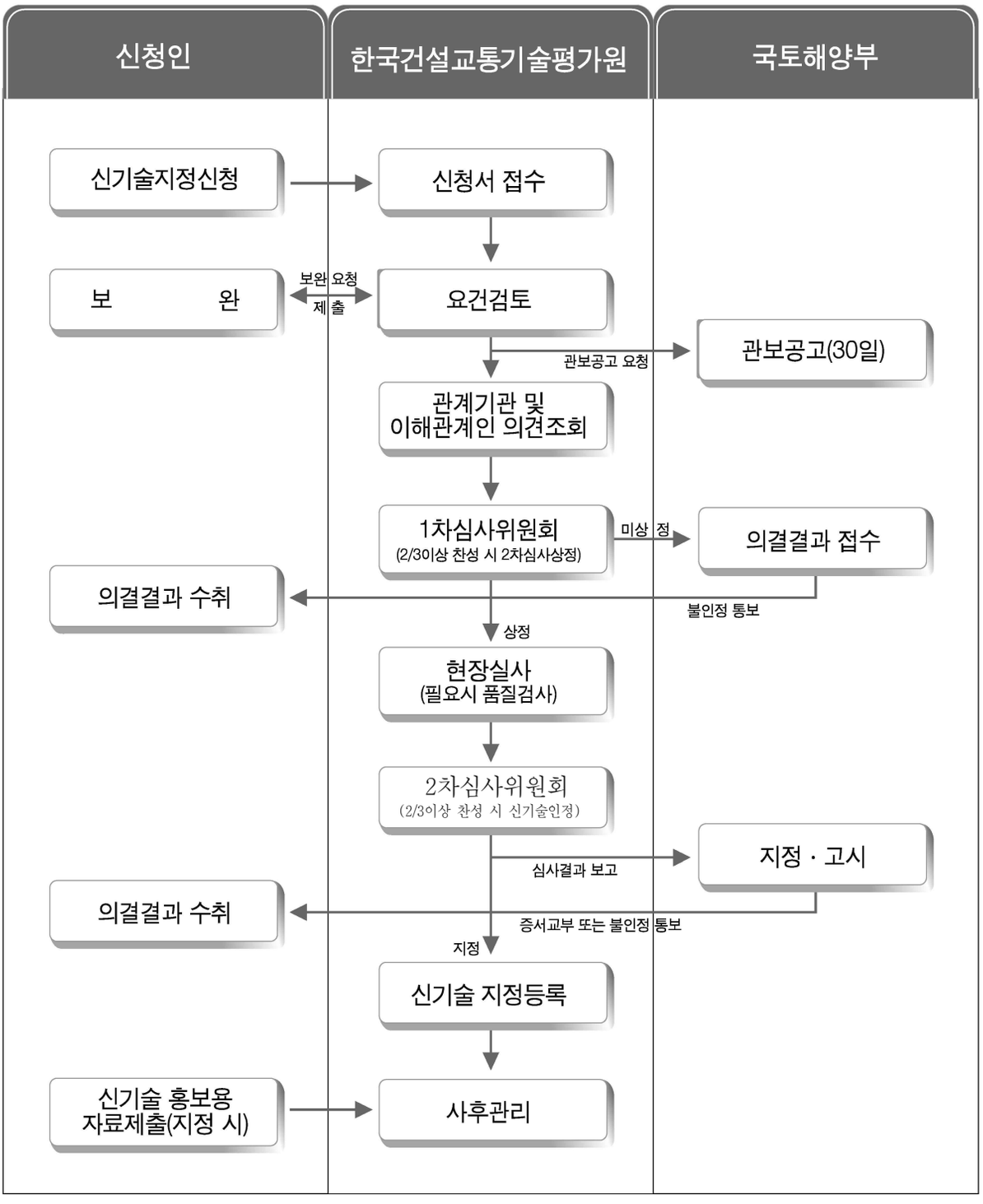
○ '11.12.15 : 신청서 구비서류에서 선행기술조사결과서 제외

○ '11.12.25 : 국가주도의 신기술 품셈 마련

○ '12.10. 1 : 2차 심사 불인정 기술을 재신청할 경우 1차 심사 면제
국가R&D 결과물을 신기술로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신기술 지정심사 요건 통합 조정(7개→5개)

나. 신기술 지정

1) 지정심사 처리절차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여야 함
- 소유권이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이 신기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을의 동의서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나)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평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의 제한을 받는 자

- 신청서 접수 후 지정·고시되기 전에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법 제1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

○ 지식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경우 최초권리자는 자격이 소멸

3) 제출서류

○ 신기술지정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기술지정신청서(별책)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원가계산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청서 파일(별책부록 및 원가계산서 등 포함)이 수록된 전자문서 1부

- 신청서 : 흔글 2007 버전 이상
- 원가계산서 : EXCEL
- 부록, 연구보고서 등 : PDF파일

※ 1차심사를 통과한 경우 심사위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차심사용 신청서, 부록 및 원가계산서 등 각 15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시험성적서, 활용실적 서약서, 실적증명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 원본 서류는 신청서 부록에 포함하여 제본하거나, 별도 제출 가능

4) 신청서 접수 절차

신청서 초안 작성

▼

원가계산서 발급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검토 및 상담
※ 원본 지참하여 평가원 방문

▼

신청서 보완 작성

▼

접수(신청인 담당자는 웹상에서 회원 가입 후 방문)

▼

등록(평가원 담당자가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http://ct.kictep.re.kr)에 등록)

5) 신기술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 수수료 금액 : 총 351만원(V.A.T. 없음)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현장실사 비용 : 실비 정산하여 납입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심사 통과 후 납입)

○ 수수료 납부방법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한 후 1차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 2차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납부계좌 : 하나은행 448-910016-60504

 예 금 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계산서 수취를 원할 경우 팩스로 요청(Fax: 031-382-6436)

6) 선행건설기술 조사

○ 평가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선행건설기술을 조사하여 목록을 신청인에게 송부

○ 신청인은 조사된 선행건설기술과 신청기술의 차별성에 대한 답변자료를 1개월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와 신청인의 답변서를 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

7) 원가계산 조사

○ 신청인은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아 신청서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1조에 의한 '용역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

※ 원가계산서 뒷면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인증서', '등록증' 또는 '자격요건 심사결과 통보서' 제시(용역기관 인증 유효기간 확인)

○ [원가계산서]는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원가계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원가계산서 표지 및 요약표는 매뉴얼 제9호서식 참고

○ [원가계산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임

※ 원가계산서 발급후 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물가가 크게 변동된 경우 재조사

8)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가) 관보공고

○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신청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 (http://gwanbo.rea.go.kr)에 공고

○ 공고내용(매뉴얼 제2호 서식)

-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청된 기술의 명칭·기술의 요지 및 범위

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 평가규정 제8조에 의한 기술검토기관, 선행건설기술조사기관,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의 의견 청취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

9)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 제출기한 : 신청기술의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방법 : 이해관계의견서[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에 맞게 작성하여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공문으로 제출

※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신기술 신청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원장은 비밀유지 관련 각서[평가규정 별지 제14호서식]를 받고 신청서를 교부

※ 신청서 열람 요청시에는 열람요청 공문, 각서,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증서(인감증명서 필요),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신청서를 평가원 외부로 반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반납

○ 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포함)

○ 이해관계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자료

○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또는 의견 제출 제한

-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 신청인은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인이 상기 기한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음

○ 평가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10) 1차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선정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 선정 가능
- 신청인이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신기술 보유업체, 특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에 제시한 경우 검토후 배제

○ 신청분야 유효성 검토

-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 개회전에 서면으로 심사하여 심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이 건설분야의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신청서 반려

○ 사전질의서 작성

- 심사위원이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원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이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전달

○ 위원회 개회·의결 정족수 및 의결내용

-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 개회
-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1차심사위원회 “인정” 여부 의결
- 1차심사위원회 “인정” 기술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실사할 대상 현장 및 실사시기·현장실사 시 주요 확인사항 결정

※ 위원회 지적사항 및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 가능

○ 심사사항

- 건설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규성·진보성 및 경제성의 부합 여부
- 기타 평가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 면제

-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함

11) 현장실사

○ 현장실사 심사위원은 1차심사위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 현장실사는 신청기술의 심사 기준 충족여부, 신청서 내용대로의 현장적용여부·시공품질 및 성능·시방서와의 일치여부·구조적 안정성 등을 확인

○ 현장실사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현장실사에는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정수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직원 및 관계자 참여

○ 평가원장은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음

○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12) 품질검사

○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요구

○ 평가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5조 및 영 제91조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KOLAS(한국공인인정기구)의 인증기관임(건설신기술정보마당 http://ct.kictep.re.kr 자료실 참조)

13) 2차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과 평가원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선정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 선정 가능

- 신청인과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신기술 보유업체, 특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에 제시한 경우 심사위원 선정시 반영

○ 사전질의서 작성

- 심사위원이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평가원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이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전달

○ 위원회 개회 정족수 및 의결내용

-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인정” 여부 의결

- 신기술로 “인정”된 경우 심사위원이 합의하여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의결

○ 심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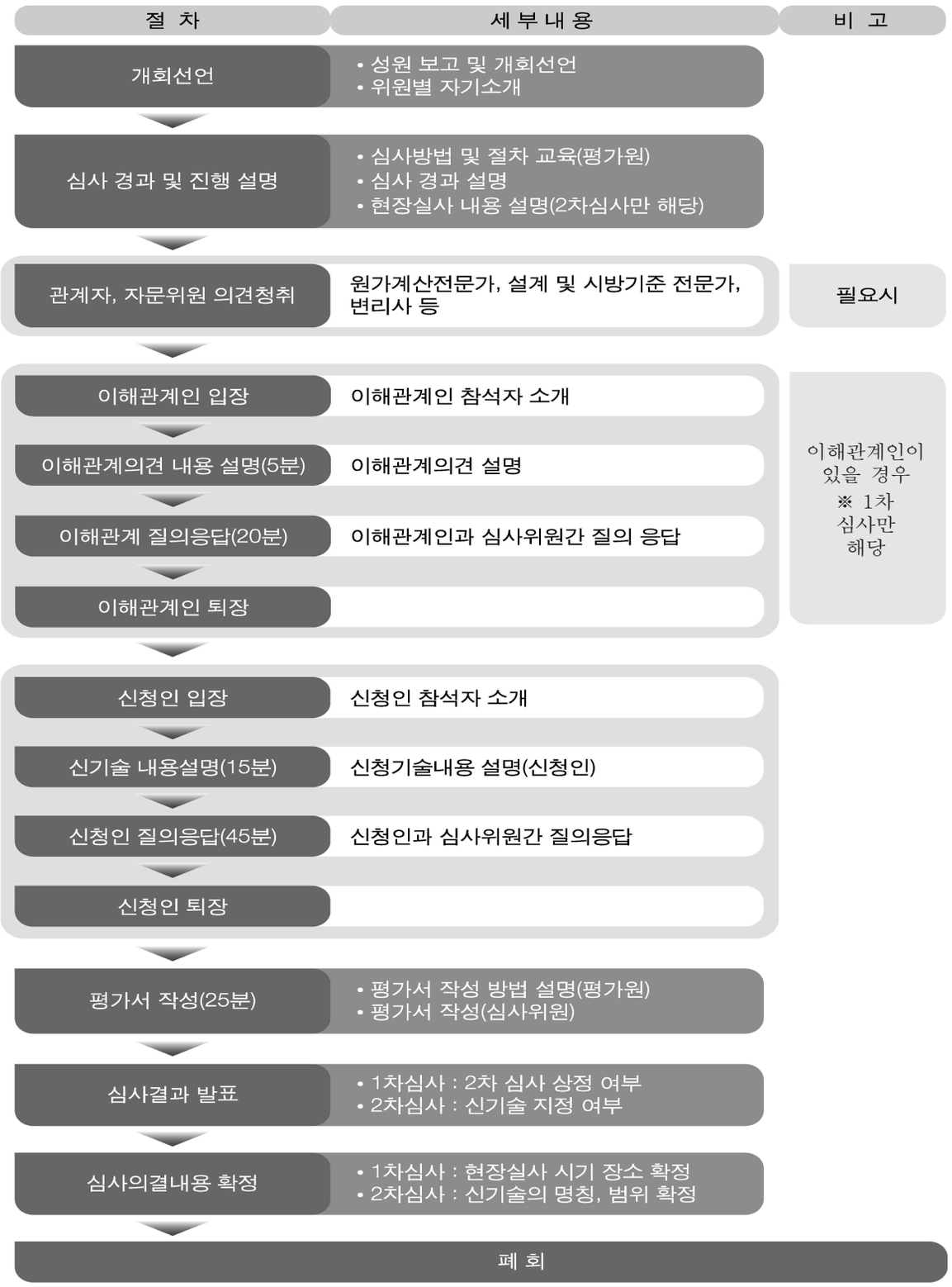
- 현장적용성, 보급성의 부합 여부

-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차심사위원회 내용 및 신청인 준비사항은 1차심사위원회와 동일. 다만, 이해관계인은 참석하지 않음

14) 신기술심사위원회 회의순서 및 신청인 준비사항

가) 신기술심사위원회 회의순서



나) 신청인 준비사항

○ 신청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전까지 [매뉴얼 제6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공문(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자를 제한

- 신청인이 단독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5인 이내(개인 단독인 경우 본인만 참석 가능)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신청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 제출
- 신청인이 6개 법인 이상 공동인 경우 5명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신청기술의 개발에 관여한 외부인(연구용역, 특허발명 등)은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정원 외 참석 가능. 다만, 발표는 불가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가능
- 외부고문, 자문위원 등 제3자 참석 불허

※ 신청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시 신청인의 의견 진술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인은 발표자료를 15분 이내 분량으로 작성(MS PowerPoint 권장)하고, 17부를 출력하여 심사 당일 평가원 담당자에게 제출(시공과정을 담은 동영상, 신청기술 샘플 및 모형 제시 가능)

※ 가급적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이용

○ 위원회 설명자료 중 필수 포함 사항

-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의 기술개발 역할 및 내용
- 보호받고자 하는 신기술의 범위
- 심사요건 설명자료

○ 심의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요점만을 간략히 설명하고, 증빙자료 제시

다) 이해관계인 준비사항(1차심사만 해당)

○ 이해관계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전까지 [매뉴얼 제7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공문(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자를 제한

- 이해관계인이 단독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3인 이내(개인 단독인 경우 본인만 참석 가능)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이해관계 의견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 제출
- 이해관계인이 4개 법인 이상 공동인 경우 3명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외부고문, 자문위원 등 제3자 참석 불허

※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예 : MS PowerPoint나 흔글 등의 발표 자료, 동영상), 위원회 설명자료(17부) 및 샘플·모형 등을 준비

※ 가급적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이용

○ 설명자료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경우와 같이 신청기술과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이해관계 의견이 아닌 주장을 할 경우에 경고, 퇴장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

15) 신기술 홍보용 자료 등록 관리

○ 신청인은 심사과정에서 요구된 보완사항 및 조정된 명칭, 범위, 내용을 반영하여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매뉴얼 제5호 서식) 및 홍보자료(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포함)를 CD형태로 평가원에 제출하고,

○ 평가원장은 신기술정보마당에 자료 등록 관리

16) 지정 및 고시

○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이후 지정증서 발급

○ 지정증서 발급 : 국토해양부장관(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관보 고시 :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korea.go.kr)

17) 신기술지정 취소

○ 사위(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18) 신기술 영문지정증서 초안 제출

○ 신기술보유자가 신기술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 매뉴얼 제16호서식에 따라 기술의 명칭, 범위, 내용 등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

19)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42조제6항 및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2월 15일까지 영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제출

○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계약하였을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영 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

○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자료, 2건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 연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가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활용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활용실적은 필요한 경우(보호기간 연장 준비 등)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수시로 제출 가능하며, 활용실적신고 관련 사항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문의(02-516-2490)

○ 이 실적은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인 “활용실적”의 증빙자료가 되므로 「신기술 범위」에 해당되는 실적만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내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 대하여 당해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연장신청시 구비서류로 제출

※ 신기술 개발자는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평가원 기술인증센터에 즉시 통보

20) 시방서 등 변경금지

○ 신청인은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관련 법령이나 표준시방서 등의 변경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시방서 등을 변경해서는 안됨

○ 기술개량 및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시방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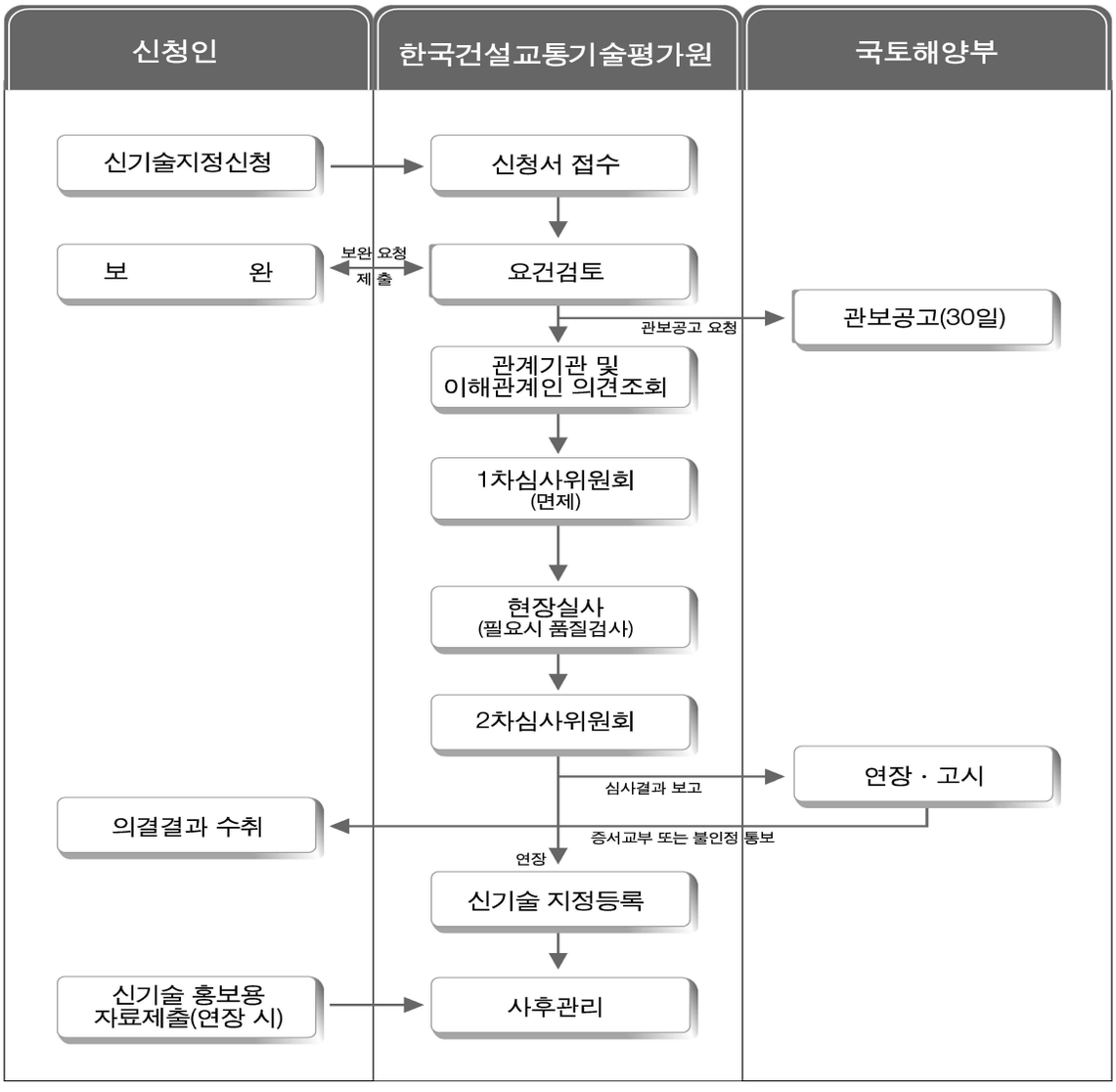
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영 제44조제1항)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영 제44조제2항)

1) 보호기간 연장심사 처리절차



2) 신청기간

○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제출

3) 제출 서류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부록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원가계산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청서 파일(별책부록 및 원가계산서 등 포함)이 수록된 전자문서 1부

- 신청서 : 흔글 2007 버전 이상
- 원가계산서 : EXCEL
- 부록, 연구보고서 등 : PDF파일

○ 신청서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시험성적서, 활용실적 서약서, 실적증명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 원본 서류는 신청서 부록에 포함하여 제본하거나, 별도 제출 가능

4) 1차심사위원회

보호기간연장심사는 1차심사 면제

5) 2차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분야의 외부전문가 선정

○ 위원회 개회 정족수 및 의결 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신청기술의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 의결

○ 심사사항

- 활용실적 및 기술의 우수성
-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
- 보호기간 중 일부 개량이 있는 경우에 적정성을 심사하여 최초 지정 받은 신기술의 내용(범위) 조정 가능
-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기술 지정심사와 같은 처리절차의 설명은 생략함

라.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1) 기술사용료 및 인증마크

○ 기술사용료 청구

-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3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747호)

○ 기술사용협약 체결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 104-27, 2012.7.9.)
 -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조건 등)
 -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료(공사원가계산 반영)를 지급받고 계약상대자(시공자)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법
 -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만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 신기술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방법
 -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함

○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함(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2) 신기술의 활용 지원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의 시험 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영 제43조)

○ 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42조제3항)
-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보고서에 지정·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규칙 제32조제1항제5호)

○ 시험시공의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영 제43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심사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21조)

○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2012.3.21.)

- 동법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2012.5.14.)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 104-27, 2012.7.9.)

 · 기술보유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3) PQ점수 부여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47-35, 2012.8.9.)

- "기술능력"에 건설신기술에 한해 PQ심사시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점,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까지 배점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4644호, 2011.5.30)

- 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 개발실적은 최대 3점, 활용실적은 최대 3점 배점

○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령 제499호, 2012.7.16.)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활용성의 검토정도에 따라 기술향상 점수 배점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97호, 2010.12.30)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1점/건 배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012-499호, 2012.7.16)

- 제75조제10항 및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5점 가감점(예산절감, 신기술, 부실벌점, 재해발생 등)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6호, 2009.12.31.)

- 개발실적 항목에서 3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1점까지 배점할 수 있음

○ 「종합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

- "신인도평가액"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음(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2) (국토해양부령 제2011-397호, 2011.11.3)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50호, 2011.10.21)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해당항목 최대 1점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부고시 2012-851호, 2012.7.18.)

- 국토해양R&D결과물을 신기술로 지정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R&D과제 참여시 선정평가에서 2년간 1점 가점

4)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 보상

○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영 제42조제5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2012.5.14.)

마. 신기술 부정 ·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1)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위반시 제재

○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명단 확보를 위한 사전 로비, 명단 유포 및 누설(고지 포함)한 경우에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 및 이해관계의견 제출 반려 및 제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에서 제외

2) 청탁 등 부정행위와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시 신청인의 경우 당해 신청서 반려, 이해관계인의 경우 이해관계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 제한, 심사위원의 경우 신기술심사전문가 그룹에서 제외. 2년간 해당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

○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시 위원회 입장 제한, 경고, 퇴장조치

3) 신기술 신청서 임의공개에 대한 제재

○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

4) 신기술 부당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발주청은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 사용 배제 가능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연장기간 경감 및 연장 불허 조치

○ 부정행위시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 게재

5) 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심사를 회피하여야 함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기술의 신청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하여서는 안됨

2. 신기술신청서 작성요령

가. 신기술지정신청서

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2 신기술신청서 작성요령

가. 신기술지정신청서

1. 신청서(책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포함한 서류를 말함
2. 신청서는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는 『혼글 2007』 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줄간격은 160%로 함.
3. 신청서는 가능한 150페이지 내외로 양면 편집하고, 칼라인쇄나 고급지 사용은 가급적 피하되, 사진이나 도표 종류는 칼라로 인쇄
4. 신청기술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의 참고자료는 별책(부록)으로 제출하되, 별책(부록)도 목차와 페이지를 작성
5. 규격 : 국배판(A4크기, 210㎜ × 297㎜)
6. 제본 : 좌철, 무선제본
7. 신청서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시험성적서, 활용실적 서약서, 실적증명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 원본 서류는 신청서 부록에 포함하여 제본하거나, 별도 제출 가능

※ 신기술지정신청서 서식 작성요령

가) 신기술의 명칭

○ 신청기술 명칭은 신청기술의 전체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함축하여 핵심 용어 20단어 이내로 작성

○ 명칭에 외국어나 특정 상표명, 개발자의 이름이나 회사명은 쓰지 않아야 함.

○ 명칭이 긴 경우와 홍보 등을 위해 명칭을 함축한 약자로 명기 가능

○ 5가지 속성을 이용한 표현

구분	속성	표현방법
①	구조	~구조(or 형태 or 모양)의
②	요소기술	~을 이용(or 활용)한
③	적용대상	~에 적용(or 설치)되는
④	적용방식	~방식(형)
⑤	목적	~공법(or 기술)

나)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 법인명(성명)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명칭 기재(띄어쓰기 포함)

○ 주 소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 만약, 신청인이 법인과 개인, 복수의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기술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란을 복수로 작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신청서 원본에만 기재하고, 사본(40부)에는 기재하지 않음

다) 신기술의 내용(요약)

○ 전체적인 기술내용(공법) 중 신청인이 개발·개량한 “기술의 핵심” 내용을 통상의 기술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00자 이내로 요약 표기

○ 최적의 ~, 최고의 ~ 등의 미사여구와 수식어 사용 불가

라) 신기술의 범위

○ 신청인이 개발·개량하여 기존의 기술내용과 차별성 있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제시

- 기술을 구성하는 요소, 성능 구현 방법 등을 범위로 제시

○ 기존 기술의 내용과 추후 개발이 예상되는 포괄적인 개념 등은 범위가 될 수 없음

○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 성능, 효과, 미사여구 사용 불가

○ 시험성적서, 연구보고서, 현장활용 실적 등을 통해 기술의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내용에 한정하여 신기술의 범위로 신청

※ 관경 00mm, 굴착깊이 00m, 경간 00m, 옥상방수, 공동주택 등

<측면>

신기술지정신청서

크기 15

2000.○ (크기10)

□신청인□ (크기12)

<전면>

신기술지정신청서

(크기30)

(명칭:○○○○○)

(크기18)

20○○. ○ (신청년도, 월, 크기15)

(신청인:○○○)

(크기20, 하부여백 5㎝)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12.20> (앞 쪽)

<table>
<tr><td colspan="4">신기술지정신청서</td><td>처리기간
120일</td></tr>
<tr><td>신기술명칭</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자</td><td>법인명</td><td><원본에만 기재></td><td>법인등록번호</td><td><원본에만 기재></td></tr>
<tr><td>성명(대표자)</td><td><원본에만 기재></td><td>주민등록번호</td><td><원본에만 기재></td></tr>
<tr><td>주소</td><td colspan="3">(우)
(전화번호 :)
<원본에만 기재></td></tr>
<tr><td>신기술내용
(요약)</td><td colspan="4"></td></tr>
<tr><td>신기술의범위</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와 도면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td><td>수수료
신청시 1만원
(수입인지)</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목 차

1.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 51

가. 기술개발 배경 ····· 51

1) 기술개발 환경 ····· 51

2) 기술개발 목표 ····· 51

3) 기술개발 과정 ····· 51

4) 기술개발 연혁 및 관계자 ····· 51

나. 신청기술의 내용 ····· 53

1) 기술의 분야 ····· 53

2) 기술의 내용 요약 ····· 53

3) 기술의 성능 및 검증 결과 ····· 54

다. 신청기술의 범위 ····· 54

1)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 54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 54

2. 1차 심사 기준 설명서 ····· 55

가. 신규성 ····· 55

1)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 55

2) 개량 정도 ····· 56

3) 기술적인 독창성 및 자립성 ····· 56

나. 진보성 ····· 56
1) 품질 향상 ····· 56
2) 공사기간 단축 ····· 56
3) 첨단기술성 ····· 57

다. 경제성 ····· 57
1) 설계·시공비 절감 효과 ····· 57
2)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 59

3. 현장실사 계획 ····· 60
가. 현장적용 실적 ····· 60
나. 현장실사 가능 현장 ····· 61

4. 2차 심사 기준 설명서 ····· 64

가. 현장적용성 ····· 64
1) 시공성 ····· 64
2) 안전성 ····· 64
3) 구조안정성 ····· 64
4) 유지관리편리성 ····· 64

나. 보급성 ····· 64
1) 시장성 ····· 64
2) 공익성 ····· 64

5. 신기술시방서 ····· 65

6. 유지관리지침서 ····· 65

7. 기술 사용 자격 ····· 65

8. 신청인이 보유한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 66

<별책 1> 신청서 부록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67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67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67
라.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67
마.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 67
바. 불인정 사유(불인정 기술 보완 신청시) ····· 68
사. 기타 증빙자료 ····· 68

<별책 2> 원가계산서

1.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1) 기술개발 환경

○ 신청기술의 개발 환경 및 배경을 기술하는 것으로, 기존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의 기술동향을 설명

2) 기술개발 목표

○ 신청기술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타당한 내용임을 설명

3) 기술개발 과정

○ 기술이 개발 또는 개량되기까지 실패를 극복한 내용, 대안의 내용 등 추진 과정을 설명

4) 기술개발 연혁 및 관계자

○ 기술개발 연혁

개발과정	일 자	주요 진행내용	개발자 (신청인)
예) 개발동기	200?.0?	•	
예) 시장조사	200?.0?	•	
예) 공동 기술 개발 협약	200?.0?	•	
⋮	⋮	⋮	⋮

※ 신청기술의 조사·연구개발·시험시공·실제시공

-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내역(해당시)

부처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 책임자	총 연구기간	개발자 역할	비고
국토해양부	건설기술혁신	○ 과제명 : 000	000			
		- 세부과제명 : 000	000			
⋮	⋮	⋮	⋮			

※ '개발자 역할'은 주관, 협동, 위탁, 참여기업 등

○ 기술개발 관계자

- 신청인

신청인	개발자	주요 역할내용	입증자료
신청인1	○○○	• 기술개발 총괄 책임자	별책 000쪽
	○○○	• 품질검증	
	○○○	...	
신청인2	○○○	• 기술개발 책임자	별책 000쪽
	○○○	...	
	○○○	...	

※ 입증자료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등록), 기술개발협약서, 연구비 지급 영수증, 인건비 등 기술개발에 소요된 사용경비지출서, 세금계산서 등

- 연구용역, 시험, 산업재산권, 발주처 등

구분	기관명	내용	입증자료
연구용역	○○○대학교	• 구조안전성 검토	별책 000쪽
	○○○	•	
시험, 검증	○○○시험연구원	• KS ○○ 시험	별책 000쪽
	○○○		
	○○○		
지식재산권 소유기관	○○○	• 특허 제10-000000호	별책 000쪽
	○○○	•	
원가계산서	○○○연구소	• 구조안전성 검토	원가계산서
현장적용 (발주처)	서울시	○○○ 건설공사	별책 000쪽
	○○○	•	
	○○○		
	○○○		

- 동종업계 유사신기술 보유자 등

구분	기관명	내용	입증자료
유사신기술 보유자	㈜○○, ○○대학, 홍길동	• 건설신기술 제000호	별책 000쪽
	○○○	• 환경신기술 제000호	
특허 침해, 소송 등 분쟁	○○○	• 특허심판 진행중	별책 000쪽
	○○○		
	○○○		

나. 신청기술의 내용

1) 기술의 분야

○ 신청기술이 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건설신기술 신청분야 제시

대분야	중분야	소분야	세분야
A토목	01도로	02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01콘크리트 포장
A토목	01도로	04도로기층	01도로기층 포장

※ 신청분야가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2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하고, 건설분야의 기술이 아닌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1차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 기술의 내용 요약

○ 전체적인 신청기술의 내용(공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도·대표도면·사진 등을 이용하여 설명

개념도(대표도면)

3) 기술의 성능 및 검증 결과

○ 신청기술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준(품질시험기준 등)을 근거, 타당성 및 절차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수행한 시험시공결과 등 검증결과 및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증빙자료는 별책에 수록)

검증항목	검증기준	검증결과	분석 내용
압축강도	00MPa 이상	00MPa	신청서 00쪽 품질관련 내용 참고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다. 신청기술의 범위

1) 범위에 대한 상세설명

신청 범위	<별지 제18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상세 설명	<위 신청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 기존기술과 시공절차가 상이한 내용과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절차 표시

○ 시공절차가 기존기술과 같은 경우에도 주요자재나 시공방법 등이 상이하면 신기술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번호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범위에 해당 여부
1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
2	②거푸집 조립	②거푸집 조립	○
3	③콘크리트 타설	③콘크리트 타설	
4	④표면 마무리	④표면 마무리	
5	⑤양생	⑤양생	
6	⑥거푸집탈영	⑥거푸집탈영	○
7	⑦박리제 도포		
8	⑧표면결함보수	⑦표면결함보수	

2. 1차 심사 기준 설명서

가. 신규성(40점 배점)

○ 신규성은 외국기술을 포함하여 유사기술의 유무 및 기존 기술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을 통한 신규성을 설명

○ 개량된 기술이란, 개량의 정도가 기술적 독창성이나 기술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술이어야 함

1)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목록을 제시하고, 신청기술의 핵심내용이 특허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

구분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등록, 특허출원 등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 관련 산업재산권이 없는 경우 최초로 개발한 기술의 내용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 동종분야의 유사 기술을 조사하여 차별성 설명

구분	기존기술명	기술내용	기존기술 도면	신청기술 도면	신청기술과의 차별성	비고
1						신기술000호
2						특허
3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 신청기술과 특히 유사한 기술의 경우 상세내용이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람
- 신청기술과 기존기술의 비교 도면을 첨부하여 기술적측면에서 차별성을 설명
- 비교대상 기술은 신청인이 임의로 조사하되,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술과 기존 신기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비고란에는 신기술 지정번호, 특허 등록번호 등 기재(해당시)

○ 신청서 접수후 평가원장이 선행건설기술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은 조사된 기술과의 차별성에 대해 비교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2) 개량 정도

○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및 효과 등을 개량한 정도를 설명

○ 전체 공정에서 신청기술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해 설명

3) 기술적인 독창성 및 자립성

○ 선행공정 또는 작업조건에 영향이 적고 균질한 성능 발현 가능 여부

○ 자재, 인력, 기술력 등이 환경변화에 영향이 적고 외국기술 및 타 기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성이 우수한 정도를 설명

나. 진보성(40점 배점)

1) 품질 향상

○ 품질의 목표 및 기준(KS기준 등) 제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성능평가서 등에 근거하여 품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 설명

관련 법규 및 기준		품질기준 세부내용	비 고
(예)법규	도로설계기준		
(예)KS기준			

※ 단순히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품질이 우수한 정도를 설명

2) 공사기간 단축

○ 공정표, 시공순서 등을 도식화하여 해당공종의 전체 공사기간(또는 시간) 제시 및 기존기술 대비 공사 단축기간(또는 시간) 및 효과 등을 설명

3) 첨단기술성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에너지절감·친환경 관련 등 핵심기술에 대한 내용 설명

※ 건설교통R&D 성공과제의 성과물 또는 녹색인증 기술은 해당항목 최대점수 부여

다. 경제성(20점 배점)

1) 설계·시공비 절감 효과

○ 아래 예시와 같이 기존기술과 신청기술의 시공절차를 도식화하여 해당공종의 전체 공사비와 신청기술의 고유영역에 대한 공사비를 작성하되,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공종은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산출

예시)

① 신청기술의 고유영역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구분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청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청기술 고유영역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②거푸집 조립	②거푸집 조립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③콘크리트 타설	③콘크리트 타설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④표면 마무리	④표면 마무리	토목 6-3-2 합판거푸집	○ (장비개발)
⑤양생	⑤양생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⑥거푸집탈영	⑥거푸집탈영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⑦박리제 도포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⑧표면결함보수	⑦표면결함보수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② 시공절차별로 품 작성

시공절차 세부항목[1]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출처[2]
	품명	규격			
①거푸집제작 ③거푸집조립 …	합판		㎡	0.47 (3회 기준)	표준품셈 토목, 6-3-2 합판거푸집
	각재		㎥	0.018(3회 기준)	
	…				
	형틀목공		인	0.10 (3회 기준)	
	…				

(작성방법)

[1] " 시공절차 비교표"는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 중 복수의 세부항목이 1개의 정부 표준품셈과 대응 또는 인용되는 경우는 출처가 동일한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모두 기입
- 표준품셈 복수 항목을 조합하여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구성한 경우,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을 **표준품셈 단위로 분개하여 출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

[2] 정부 표준품셈이 있는 항목 및 인용된 항목은 표준품셈의 부문, 장-절-항 표시, 표준품셈 없는 경우는 출처(자사기준 등) 기술

[3] 주기사항은 제시한 품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를 작성

- 신기술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한계)를 기술
- 장비개발의 경우 기계경비손료, 장비가격, 연료소모량, 장비가격 등을 기술
- 재료량 및 품의 할증이 포함된 경우 모두 기입

③ 시공절차별로 일위대가 작성

[작성예시]

시공절차 세부항목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단가			금액 (소요량×단가)				단가출처*
	품명	규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①거푸집제작 ③거푸집조립 …	합판		㎡	0.47	8,062			3,789			3,789	건설물가 11.7 △△△쪽
	각재		㎥	0.018	299,400			5,389			5,389	가격정보 11.7 △△△쪽
	…											
	형틀목공		인	0.10		104,308			10,413		10,413	'11년 상반기 시중노임
	…											
계**												

④ 원가계산서에 작성 방법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고,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공사비 분석

2)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LCC 전반에 걸쳐 비용 절감효과 등

※ 가설기술, 해체기술 등 유지관리가 불필요한 기술인 경우 유지관리비용의 산출을 생략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

○ 환경개선, 민원 처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등

3. 현장실사 계획

가. 현장적용 실적

1) 목록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비고
1	○○○공사					()	예) 발주청확인
2						()	감리사확인
3						()	시험시공
4						()	증빙없음

○ 신청기술의 적용현장 목록을 모두 제시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현장의 경우 현장별로 설명자료 제시

- 신청기술의 내용중 일부만 적용한 경우
- 기술개발 과정에서 적용한 현장으로서, 최종 신청기술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등

2) 실적 확인

○ 실적증빙 확인주체(발주처, 시공사, 감리사 등)를 기재하고, 부록에 해당증빙 자료 첨부

연번	공사명	확인주체	기관명	주소	담당부서	
1	○○○공사	발주처		우(-) <도로주소명 표기>		
2						

나. 현장실사 가능 현장

1) 목록

우선순위	공 사 명	발주처/ 신청기술 시공자	신청기술만의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원)	시공장소	비고
1	예) XX 포장공사	XX시청/ (주)XX건설	2008.08.03~2009.08.03 45,000,000원	서울시 구로구 XX도로	시공예정
2	예) XX 포장공사	XX시청/ (주)XX건설	2008.08.03~2009.08.03 45,000,000원	서울시 구로구 XX도로	준공
3					
4					
5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 신청서 접수일부터 3개월 전후로 현장실사 가능한 현장 5개소 이내로 제시

- 현장 접근성, 공사규모, 적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제시
- 시공중인 현장 및 준공 현장을 구분하여 제시

○ 1차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필요 여부, 실사 시기 및 장소를 결정하므로 실사현장 목록이 변경된 경우 1차심사 전까지 평가원담당자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2) 실사 가능현장 현황자료

○ 현장실사 후보지별로 공사 개요 및 현장설명 자료를 현장 특징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각 현장에 대한 현장실사 가능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실사현장 현황자료

실사장소 우선순위	1

<table>
<tr><td rowspan="8">신청기술 적용현장 개 요</td><td>공 사 명</td><td colspan="2"></td><td rowspan="5">○현장사진</td></tr>
<tr><td>발 주 처
(감 리 자)</td><td colspan="2"></td></tr>
<tr><td>계약형태</td><td colspan="2">○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기타</td></tr>
<tr><td>전체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td><td colspan="2"></td></tr>
<tr><td>시공규모</td><td colspan="2"></td></tr>
<tr><td>현장위치
(주 소)</td><td colspan="4"></td></tr>
<tr><td>공사 기간</td><td colspan="2">(~) 총 일</td><td colspan="2">○시공예정
○시공중
○준 공</td></tr>
<tr><td>투입인원및 장 비</td><td colspan="2"><인원>
• 기술공 : 인
• 보통인부 : 인</td><td colspan="2"><장비></td></tr>
<tr><td rowspan="4">현장설명</td><td>현장특징</td><td colspan="4">※ 우선순위 선정사유, 현장조건이나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td></tr>
<tr><td>하자발생</td><td colspan="4">※ 하자발생 여부 및 보수 내용 설명</td></tr>
<tr><td>실사 가능 시기</td><td colspan="4"></td></tr>
<tr><td>실사 가능 공정</td><td colspan="4"><table><tr><td>① 공정1</td><td>② 공정2</td><td>③ 공정3</td></tr><tr><td>현장실사 가능</td><td>현장실사 가능</td><td>현장실사 불가능</td></tr><tr><td>사진</td><td>사진</td><td>사진</td></tr></table></td></tr>
</table>

※ 위 양식을 복사하여 실사현장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별로 작성

3)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 현장실사시 확인 할 사항을 신청인이 제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후 최종 확정, 필요시 준공현장과 시공현장의 확인사항을 별도로 제시

○ 현장적용내용(발주내용 포함)과 품질·성능·효과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만 제시하고, 시험성적서 등 서류심사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적용자재 확인	섬유+혼화재	육안확인	※ 공란(심사위원이 기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나) 품질검증 방법 및 결과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슬럼프 플로우	00이상	현장시험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섬유 혼입률	0.05 %이상	육안확인	

라) 구조적 안정성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압축강도	00MPa 이상	비파괴시험	

4. 2차 심사 기준 설명서

가. 현장적용성

1) 시공성

○ 기존기술에 비해 공정이 간소화되고, 시공이 간편한지 여부를 절차별로 설명

○ 선행 및 후행 공정과의 간섭 여부 고려

2) 안전성(safety)

○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소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3) 구조안정성(stability)

○ 관련 법규 및 기준을 만족하고, 환경이 변화하여도 기준이상의 품질 보증이 가능한지 여부

4) 유지관리편리성

○ 유지관리가 필요한 기술인 경우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시 인력, 장비 등 투입 빈도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내용에 대한 설명

나. 보급성

1) 시장성

○ 국내의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국내외 수급(需給)동향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시장특성 및 구조, 유사기술과의 경쟁상태 및 유사기술의 출현가능성, 해외시장 수출 전망에 대하여 설명

○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선호도와 활용가능성을 설명

2) 공익성

○ 신청기술이 보급될 경우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과 공익성 측면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

5. 신기술 시방서

○ 신청기술과 관련된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시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시방서의 내용을 중점 기술

설계 및 시방기준	기준 명	관리기관
설계기준	예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시방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한국콘크리트학회

○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호)'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하여 설명하기 바람

6. 유지관리지침서

○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용된 이후 신청기술에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유지관리지침 내용 기술

7. 기술 사용 자격

○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거나 신기술 사용 협약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제시(사업자 면허, 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조건 등)하여 부적절한 사용자에 의한 신기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8. 신청인이 보유한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가. 선행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

○ 신청인이 동종분야의 신기술을 기존에 보유한 경우 해당 기술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을 설명

- 도면, 사진 또는 개념도를 포함하여 설명
- 기존 신기술(타 부처의 신기술 포함)을 개량하여 신청한 경우 기존에 개발한 내용과 신규로 신청하는 기술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구 분		신청기술	선행 신기술
유사성	1.		
	2.		
차별성	1.		
	2.		

나. 불인정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

구 분		신청기술	불인정된 기술
유사성	1.		
	2.		
차별성	1.		
	2.		

○ 불인정된 기술을 개선 보완 없이 재신청 하는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불인정된 기술과의 차별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불인정 사유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 위 표에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본문에는 불인정 사유에 대한 개선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술

<별책 1 : 부록>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신기술 지정요건의 신규성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신청기술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등록원부(출원사실증명원) 및 명세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예시) 특허의 목록 / 특허증 사본 / 특허등록원부 원본(출원사실 증명원) / 명세서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내역이 있는 경우 근거자료 제시(R&D 참여실적 증명서, 연구개발 협약서 등)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신기술 지정요건인 진보성(품질)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신청서 본문 내용에 제시된 품질시험결과 데이터에 대한 근거자료(시험성적서, 성능시험 성적서 원본)를 첨부

라.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신청기술과 관련이 있는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이 있는 경우 중요사항 제시

마.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 발주기관 또는 실적관리기관(전문건설협회, 발명진흥회 등)에서 실적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발주기관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시공사 또는 감리사의 확인 가능

- 시공중인 공사: 공사계약서 또는 기성실적증빙
- 준공된 공사: 공사실적증빙

※ 1. 공사명과 신청기술명이 상이하거나, 실적증명서 만으로 신청기술 적용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 필요
2. 자체시공, 시험시공 등 실적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 관련 공문, 현장 실측 데이타 등 입증자료 필요

○ 기관의 직인이 아닌 감독관이나 현장소장 등의 개인서명은 무효

바. 불인정 사유(불인정 기술 보완 신청시)

○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 심사결과(불인정 사유) 공문 내용을 제시

○ 불인정 사유에 대해 개선·보완한 내용은 신청서 본문에 설명

사. 기타 증빙자료

○ 녹색인증서, 표창, 타기관 기술평가서, 인증서 등 참고사항

○ 기타 신청서 본문 내용 중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별책 2 : 원가계산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1조에 의한 '용역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

※ 원가계산서 뒷면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인증서, 등록증 또는 자격요건 심사결과 통보서 제시(용역기관 인증 유효기간 확인)

○ [원가계산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임

※ 원가계산서 발급후 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물가가 크게 변동된 경우 재발급 필요

○ [원가계산서]는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원가계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1. 신청서(책자)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포함한 서류를 말함

2. 신청서는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는 『흔글 2007』 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줄간격은 160%로 함.

3. 신청서는 가능한 150페이지 내외로 양면 편집하고, 칼라인쇄나 고급지 사용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되, 사진이나 도표 종류는 칼라로 인쇄

4. 신기술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의 참고자료는 별책(부록)으로 제출하되, 별책(부록)도 페이지를 작성하고 목차를 구성할 것

5. 규격 : 국배판(A4크기, 210㎜ × 297㎜)

6. 제본 : 좌철, 무선제본

7. 신청서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시험성적서, 활용실적 서약서, 실적증명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 원본 서류는 신청서 부록에 포함하여 제본하거나, 별도 제출 가능

<측면>

보호기간연장신청서

크기 16

2000.○

(크기10)

□신청인□

(크기12)

<전면>

(건설신기술지정 제○○○○호)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크기30)

(명칭:○○○○○)

(크기18)

200○. ○ (신청년도, 월, 크기15)

(신청인:○○○)

(크기20, 하부여백 5㎝)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0.12.20> (앞 쪽)

<table>
<tr><td colspan="4">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td><td>처리기간
120일</td></tr>
<tr><td>신기술의 명칭</td><td colspan="4">※ 지정시 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건설신기술 제 호)</td></tr>
<tr><td rowspan="3">신청인
(신기술
개발자)</td><td>법인명</td><td><원본에만 기재></td><td>법인등록번호</td><td><원본에만 기재></td></tr>
<tr><td>성명
(대표자)</td><td><원본에만 기재></td><td>주민등록번호</td><td><원본에만 기재></td></tr>
<tr><td>주소</td><td colspan="3">(우)
(전화 :)
<원본에만 기재></td></tr>
<tr><td>신기술
내용(요약)</td><td colspan="4">※ 지정시 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td></tr>
<tr><td>신기술의
범위</td><td colspan="4">※ 지정시 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td></tr>
<tr><td colspan="5">「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td><td>수수료
1만원
(수입인지 첨부)</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삽입

목 차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 79

가. 기술개발 배경 ····· 79

나. 신기술의 내용 ····· 79

다. 신기술의 범위 ····· 79

1)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 79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 79

3) 범위 변경 ····· 79

2.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 설명서 ····· 80

가. 활용실적 ····· 80

1) 활용 건수 및 금액 ····· 80

2) 활용실적 분석 ····· 80

나. 기술의 우수성 ····· 81

1) 기술수준 ····· 81

2) 품질검증 ····· 81

3) 경제성 ····· 82

4) 시장성 ····· 82

5) 안전성 ····· 82

6) 기술개량 ····· 83

7) 권고사항 이행여부 ····· 83

다. 가점, 감점 등 ····· 83
1) 사후평가 결과 ····· 83
2) 해외 활용실적 ····· 83
3) 기술보급 노력 ····· 83
4) 감점 해당 여부 ····· 83

3. 현장실사 계획 ····· 84

4. 지식재산권 내역 ····· 84

5. 신기술시방서 및 유지관리서지침서 ····· 84

6. 기술 사용 자격 ····· 85

<별책 1 : 부록>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86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86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86

라.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 증빙자료 ····· 86

마.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86

바. 신기술 활용 및 홍보실적 증빙자료 ····· 86

사. 기타 증빙자료 ····· 87

<별책 2 : 원가계산서>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나. 신기술의 내용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다. 신기술의 범위

1) 범위에 대한 설명

<신기술 지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하여야 함>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신기술 지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하여야 함>

3) 범위 변경

○ 신기술 지정 이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량한 내용을 범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작성

○ 신규성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음. 다만 명칭은 변경하지 않음

2.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 설명서

가. 활용실적

1) 활용 건수 및 금액

○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상의 활용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전체 공사중 일부만 신기술로 활용한 경우 “신기술범위”에 해당하는 활용실적만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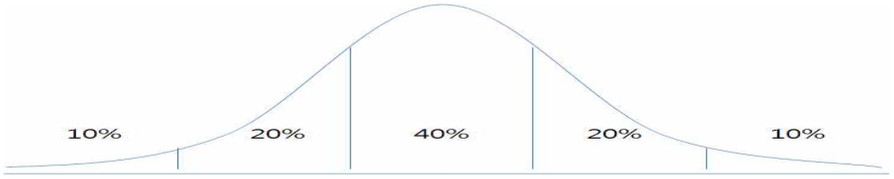
○ 2년도 이상 진행된 계속공사인 경우 1건으로 산정(공사비는 합산)

(단위 : 천원 , VAT포함)

순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 주 처	실적금액	지역	비고
▪ 2010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1						
2						
▪ 2009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3						
	합 계		원			

2) 활용실적 분석

○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라 해당하는 활용실적 구간을 표시하고, 신기술 지정 전후의 활용실적 비교, 동종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실적에 대한 설명

활용실적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실적분포					
활용건수	3 이하	4 ~ 15	16 ~ 60	61 ~ 150	151 이상
활용금액(억원)	3 이하	3 ~ 25	25 ~ 120	120 ~ 300	300 초과

※ 활용건수와 금액의 구간이 상이한 경우 높은 구간을 적용

나. 기술의 우수성

1) 기술수준

가)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분석

○ 국내·외 동종의 유사 기술(신기술 포함)의 수준과 신기술의 기술수준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비교·분석

○ 신기술지정 이후 해당 기술과 관련된 법규나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나) 향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및 발전 방향 분석

○ 국내·외 수급동향 및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라 보완·개선사항을 도출·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분석하여 제시

2) 품질검증

가) 적용 현장에 대한 품질검증

○ 신기술 적용 현장에서 기성보고 및 준공검사 시 실시한 품질검증 내용을 수록

○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현장책임자(또는 감리자)의 의견서, 시험자료, 사진 등을 별책 부록에 수록

나) 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 검증

○ 보호기간 동안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 대한 성능 및 효과(시공성, 안전성 등)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되었는지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3) 경제성

○ 신기술 지정 이후 신규 개발된 기술과 국내와 건설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심사에서 경제성 재검토

○ 원가계산서에 근거하여 경제성을 정량적인 수치로 계량화하여 분석·제시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나) 향후 현장 활용을 통한 공기단축, 비용절감 가능성 등 분석

○ 향후 신기술의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기대되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효과 등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제시

4) 시장성

가) 신기술 관련 시장 동향

○ 신기술 적용결과와 동종의 유사기술(신기술 포함)을 비교하여 시장규모, 수요, 기술경쟁 상황 등의 동향 기술

나) 신기술 관련 경쟁 우위 여부, 시장 확대 가능성

○ 향후 타 기술 대비 경쟁우위 지속 여부, 시장 확대가능성 등을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제시

5) 안전성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6) 기술개량

○ 신기술 지정 이후 기술을 개량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시 기술의 범위를 변경요청 할 수 있음

7) 권고사항 이행여부

○ 신기술 지정시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 이행 내용을 설명(권고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

다. 가점, 감점 등

1) 사후평가 결과 : 기재하지 않음(평가원에서 점수 산정)

2) 해외 활용실적

해외활용건수	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 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만$ 미만	500~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배 점	1	2	3

※ 활용건수와 금액 중 배점이 큰 값을 적용

3) 기술보급 노력

연번	기관명	일시	장소	전시 내용	비고
1					※ 주관, 주최, 후원 여부
2					

※ 정부·지자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서만 기술

4) 감점 해당 여부

○ 공정거래 위반,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 활용실적 미제출 등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함

3. 현장실사 계획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4. 산업재산권 내역

가) 지정신청시 산업재산권 내역

구분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등록, 특허출원 등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나) 보호기간 동안 변경된 내역(추가, 소멸 등)

○ 최초 신기술 지정시 신청서에 제시했던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과 내역을 작성하고 변동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로 제시

구분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등록, 특허출원 등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5. 신기술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 최초 신기술 지정시 제시했던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 신기술 보호기간 동안 기술이 개량되어 일부 내용을 변경·추가·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원안과 비교표 작성

※ 최초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원장의 승인 필요

가. 현장적용 시방서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나. 유지관리지침서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6. 기술 사용 자격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별책 1 : 부록>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 신기술 지정 이후에 현장의 품질관리 과정에서 실시한 시험 또는 성능평가서만 해당

라.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 증빙자료

○ 국내외 동종기술과의 비교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 항목별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

마.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바. 신기술 활용 및 홍보실적 증빙자료

○ 활용실적 : (사)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를 제시

○ 홍보실적 : 정부·지자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참여사실확인서, 관련공문, 사진, 기사 등

사. 기타 증빙자료

○ 신청서 본문 내용 중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수록

<별책 2 : 원가계산서>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3.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 자료 작성요령



3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 자료 작성요령

가. 신기술 요약자료

○ 신기술의 내용, 활용전망,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매뉴얼 제8호서식]에 맞춰 A4규격용지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신기술의 기본설계도(상세도면 및 개념도)를 첨부

나. 신기술 홍보용 자료

○ 신기술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수정·보완

○ 신기술지정신청서 책자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신기술지정증서」로 교체하고, 신기술지정신청서 책자에 있는 명칭, 범위 및 기술의 내용은 「신기술지정증서」상의 명칭, 범위 및 기술의 내용으로 하며, 페이지의 연번 부여

○ 신기술 홍보용 책자는 [매뉴얼 제5호서식]에 맞추고, 책자 후면에는 신청인 소개·연락전화번호·주소 등을 게재

○ 사이버전시관에 등록할 시공영상, 사진 등을 포함한 홍보자료 제출

○ 신청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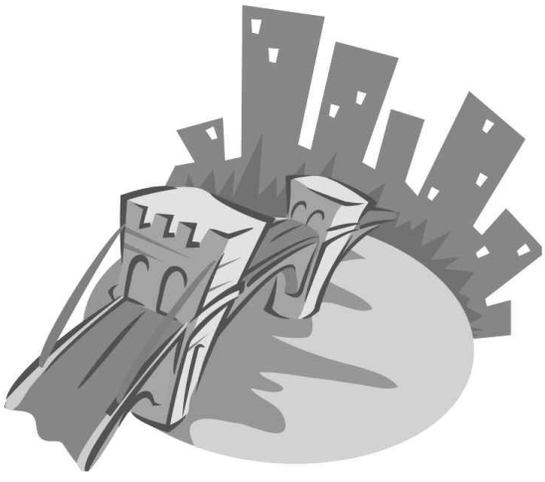
○ 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공고내용, 도면 설계 및 시방기준 등 신기술관련 일체)을 수정 보완한 홍보용책자, 홍보용 동영상 등이 포함된 **전자문서(CD)** 1부를 평가원장에게 제출

※ 2012년부터는 홍보용 책자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문서(CD)만 제출

4.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

가.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등

나. 질의회신



4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

가.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등

1) 건설기술관리법(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제18조(신기술의 활용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1.1.16, 2008.2.29>

②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3.6.11, 1997.1.13, 2008.2.29>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5, 2004.12.31>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본조신설 1993.6.11]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제39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5.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그 밖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13]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72조로 이동 <2010.12.13>]

제40조(신기술의 지정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78조로 이동 <2010.12.13>]

제41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42조에 따른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79조로 이동 <2010.12.13>]

제42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기존 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③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④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80조로 이동 <2010.12.13>]

제43조(시험시공의 권고)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81조로 이동 <2010.12.13>]

제44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

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④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⑤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4조의3에서 이동 <2010.12.13>]

제4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82조로 이동 <2010.12.13>]

제129조(업무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6. 제39조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17.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18.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19. 제42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20. 제4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③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36조의2 또는 법 제36조의8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제16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2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39조로 이동 <2010.12.20>]

제17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영 제40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영 제129조제3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③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영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20]

[제11조에서 이동 <2010.12.20>]

제18조(신기술 지정증서) ①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문개정 2010.12.20]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40조로 이동 <2010.12.20>]

제19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첨부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0.12.2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41조로 이동 <2010.12.20>]

제20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20]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42조로 이동 <2010.12.20>]

제21조(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 지정 후 1년 이내에 해당 신기술의 개발자나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0]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0.12.20>]

제32조(설계도서의 작성) ①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보고서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전문개정 2010.12.20]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61조로 이동 <2010.12.20>]

제78조(수수료) 법 제4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20]

[제48조의3에서 이동 <2010.12.20>]

[별표 18]

수수료의 산출기준 (제78조 관련)

1. 신기술 신청 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1호 및 제4호 관련)

구 분	금액(1건당)
신청수수료	10,000원
1차심사수수료	2,000,000원
2차심사수수료	1,500,000원

비 고

가.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낸다.

나. 1차 및 2차심사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낸다.

다.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마.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4)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46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12. 10 제383호
개정 2001. 8. 6 제199호
개정 2002. 10. 17 제226호
개정 2003. 5. 23 제118호
개정 2005. 6. 27 제185호
개정 2006. 7. 11 제248호
개정 2007. 3. 16 제 87호
개정 2008. 4. 28 제101호
개정 2009. 1. 2 제871호
개정 2009. 8. 21 제753호
개정 2010. 12. 23 제973호
개정 2011. 12. 15 제766호
개정 2012. 9. 28 제646호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0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영 제40조의제3항, 제44조제5항 및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지정신청”이라 함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신청”이라 함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청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또는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말한다.
5. “위원회”라 함은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위원회를 말하며, 1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1차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2차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6. “구비서류”라 함은 지정신청의 경우는 영 제39조, 규칙 제16조 및 본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연장신청의 경우는 영 제44조제3항, 규칙 제20조 및 본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7. “선행건설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에서 신청기술 조사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였거나 신기술로 등록 또는 논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8.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제3조(신청인의 자격) ①지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②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에 한한다.

③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나머지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30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은 그 기간 동안 신기술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심사기준) ①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다.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가. 현장적용성 : 시공성·안전성·구조안정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나.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②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2.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3.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4.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제2장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제5조(지정신청의 접수) ①신기술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9조제6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평가서
2. 신청기술을 적용한 시험시공 현장, 시공중인 현장, 준공현장의 목록 및 실적증빙 자료. 다만 설계관련 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4. 신청인(공동신청인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5. 신청인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6.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차별성, 개량내용, 우수성 등 비교 분석 자료
7.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③평가원장은 접수된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신기술 지정이 거부된 건설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6조(연장신청의 접수) ①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서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
2.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분석 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
3.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③영 제4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에는 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내역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④영 제4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서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적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청기술을 적용한 준공현장과 시공중인 현장의 목록 및 현장실사에 필요한 현황자료. 다만, 설계관련 건설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⑤평가원장은 접수된 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44조제4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장신청기술이 신기술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당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7조(공고) ①평가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보공고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 장관은 영 제40조제3항 또는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기술의 요지 및 범위
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명칭·분야·기술의 요지·범위 및 보호기간

③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및 건설관련 전문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일부터 30일로 한다.

②평가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의견 제출을 위하여 당해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나.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다.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3. 제2호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④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⑤평가원장은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40조제2항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영 제119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술검토기관이라 한다)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3. 평가원장이 인정한 선행건설기술 조사 기관
4. 기타 평가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기술검토기관의 의견조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선행건설기술조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를 지정신청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평가원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1차심사위원회

제10조(지정신청의 심사) ①평가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설분야의 기술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신규성, 진보성 및 경제성
3. 기타 평가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평가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1차심사 인정 여부를 의결하고, 1차심사 인정으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1차심사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
2. 현장실사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을 포함한 현장실사 계획서

④평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연장신청의 심사) 평가원장은 신속한 심사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1차심사를 면제한다.

제4장 현장실사와 품질검사

제12조(지정신청의 현장실사) ①평가원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및 국토해양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실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실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실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실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사 결과 주요 확인사항
2. 제5조제2항제1호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 등

⑤평가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의견을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현장실사 결과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연장신청의 현장실사) ①평가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실사위원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원 및 국토해양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신청의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품질검사) ①평가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에서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원장이 제5조제2항제1호의 기관 중에서 품질검사 대상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2차심사위원회

제15조(지정신청의 심사) ①평가원장은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현장적용성, 보급성
2.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인정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장신청의 심사) ①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품질검증·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실적
2.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
3. 보호기간 중 일부 개량이 있는 경우에 적정성 및 기술내용(범위) 조정사항
4.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은 신청기술의 등급, 보호기간 연장기간 및 신기술 범위의 조정 여부를 의결한다.

③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영 제44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평가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위원장 제외)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등급과 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호기간 연장도 불인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산정한 후 당해 신기술과 관련하여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경감하되, 경감되는 기간의 합이 위에서 정한 연장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명령 건당 6월씩 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부과 건당 1년씩 경감
3. 사법기관으로부터의 벌금 이상의 처벌 건당 1년 6월씩 경감

제1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평가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이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불인정”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으로 결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원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19조(지정증서의 발급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유 이외에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증서에 명시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부도·폐업 등으로 지정증서에 명시된 법인의 권리가 변경된 경우
3. 보호기간이 조정된 경우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규칙 제18조제2항의 분실 또는 훼손 및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의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제20조(활용실적 제출) ①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 활용실적 유무를 영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실적이 누락되거나 활용실적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제한하거나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장된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④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공사를 계약하였을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보유자가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활용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홍보용 전자문서(요약자료 포함)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신기술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및 업무처리정보,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 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정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정보마당)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평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정보마당)에 구축된 신기술 활용실적, 사후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신기술보호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이상의 형사상 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비밀유지 및 비공개) ①평가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서식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평가원장은 기술인증센터장을 제10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중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당해 기술의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4.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등록된 전문가 중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외로 한다.
5. 기타 평가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③평가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명단을 접수 받아 심사위원 선정시 검토하여 배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명단 등의 비공개) ①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 및 전문가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을 제한하거나, 신기술심사 전문가그룹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①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지정 신청기술이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수료 및 현장

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위원회 개회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수당의 지급 등) ①평가원장은 1차심사위원회 및 2차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실사위원에게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임단가 및 여비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사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실사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원가계산·변리사·설계 및 시방기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 등) ① 평가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당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6. 대학의 당해 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7. 건설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자
8.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9.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10.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원장이 인정한 자

②평가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건설관련단체의 직위 중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건설관련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평가원장은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성실도,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8조(기간의 산정)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보완기간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 기간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제29조(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평가원장은 건설신기술 지정 및 연장 관련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

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
2.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3.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4. 기타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④평가원장은 당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30조(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①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이 정한 때로부터 2년간 신청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서 접수 후 지정·고시되기 전에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2.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법 제1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

③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의견서가 반려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이해관계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심사위원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⑧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자료, 2건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 연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제31조(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①평가원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시 선정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23조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기술의 신청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시방서 등 변경 금지) ①신청인은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관련 법령이나 표준시방서 등의 변경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시방서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량 및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시방서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방서 등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효력) ①건설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은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승계란 개인개발자가 법인화하는 경우 및 부도·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가 재발급된 경우에는 재발급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기간은 재발급 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0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보호기간 연장기간의 평가기준(제17조 관련)

1.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종합 평가점수	90이상~100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40이상~60미만
등 급	가	나	다	라	마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 종합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가. 활용실적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		배점기준	배점
활용실적 (30)	활용건수 및 공사비	신기술 활용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30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	국내·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15
	품질검증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 등 품질검증 결과	15
	경제성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원가절감효과가 뚜렷하거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15
	시장성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5
	안전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10
	기술개량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배점	5
	권고사항 이행여부	지정시 권고사항 이행 여부	5
가점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에 따라 부여	(10)
종합점수			100

(1) 활용실적(최대 30점)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①활용건수	3 이하	4 ~ 15	16 ~ 60	61 ~ 150	151 이상
②공사비(억원)	3 이하	3 ~ 25	25 ~ 120	120 ~ 300	300 초과
배점한도	0 ~ 6	7 ~ 12	13 ~ 18	19 ~ 24	25 ~ 30

※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배점한도를 반영

(2) 기술의 우수성(70점)

항 목	배점기준	점수
기술수준 (15점)	선진외국기술(100%기준)을 능가하는 수준	15
	선진외국기술(100%기준)과 동등하여 수입대체가 가능한 수준	12
	국내 기존기술보다 10% 이상 우수한 수준	9
	국내 기존기술과 동등한 수준	6
	국내 기존기술보다 미흡한 수준	3
품질검증 (15점)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15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개선	12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검증 완료	9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미달	6
	신기술 지정 이후 품질검증 미실시 또는 자료 없음	3
경제성 (15점)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30% 이상 높음	15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20% 이상 높음	12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10% 이상 높음	9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유사	6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미흡	3
시장성 (5점)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30% 이상 높음	5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20% 이상 높음	4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10% 이상 높음	3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과 유사	2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미흡	1
안전성 (10점)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30% 이상 높음	10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20% 이상 높음	8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10% 이상 높음	6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유사	4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미흡	2
기술개량 (5점)	지정시 대비 30% 이상 개량·개선	5
	지정시 대비 30% 이내에서 개량·개선	4
	지정시 대비 20% 이내에서 개량·개선	3
	지정시 대비 10% 이내에서 개량·개선	2
	지정시 대비 개량·개선되지 않음	1
권고사항 이행여부 (5점)	권고사항 이행	5
	권고사항 미이행	0

나. 가점

(1) 사후평가결과(5점)

배 점					
0	1	2	3	4	5
100~105점 미만	105~115점 미만	115~120점 미만	120~125점 미만	125~130점 미만	130점 이상

(2) 해외활용실적(3점)

(건, 만$)

구 분	배 점		
	1	2	3
해외활용건수	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 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 이상

※ 해외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점수를 반영

(3) 기술보급노력(2점)

홍보실적	배 점		
	0	1	2
	5건 미만	5~15건 미만	15건 이상

※ 비고

1.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값을 종합평가점수로 하며,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심사위원회는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과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3. 신기술활용실적은 신청인이 보호기간 연장신청시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상의 활용실적 건수 및 공사비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2]

활용실적 누락 및 미제출 금액에 따른 보호기간 단축조정 기준(제20조 관련)

금액	100억 미만	100억~ 200억 미만	200억~ 400억 미만	400억~ 600억 미만	600억 이상
단축기간	0.5년	1년	1.5년	2년	3년

5)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시행 2011. 9.23] [국토해양부훈령 제747호, 201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7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 x : 당해금액, x_1 : 큰 금액, x_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_1 : 작은 금액요율, y_2 : 큰 금액요율

제10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9999호, 2011. 9.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술사용요율표

현 행		개정	
신기술공사비	요율(%)	신기술공사비	요율(%)
10억원	5.0	1억원 이하	8.5
		2억원	8.3
		5억원	8.0
		10억원	7.5
50억원	4.0	20억원	6.8
		50억원	6.0
100억원	3.5	100억원	5.0
150억원	3.3	100억원 초과	3.5
200억원	3.1		
300억원	2.8		
400억원	2.6		
500억원	2.4		
1,000억원	2.0		

6)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시행 2011. 9.23] [국토해양부훈령 제746호, 201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 공지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신기술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소속직원 및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⑦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유사신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9999호, 2011. 9.23>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기타 신기술 관련 법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8. 2. 29)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1.25)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21, 2011.10.28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1.23 제23313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호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라. (생략)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내용이 유사하여 생략함

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2200.04-159-21, 2012.07.09.)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9)

③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7.9)**

⑤제2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⑦기술보유자가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한다.(신설 2012.7.9)

2. 당해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 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 발주자(갑)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을"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받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한다.<본조 신설 2012.7.9.>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4-24, 2011.05.13)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동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질의회신

1)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 질의요지

- 외국에 특허등록된 기술을 건설신기술도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임

 따라서, 외국에 특허등록 되어 있는 건설기술을 기술적인 독창성이나 독립성을 갖도록 개량하지 않고 단지 국내에 도입한 기술이라면 건설신기술 지정대상이 아님

□ 질의요지

- 감리전문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의 개발자에 2개의 회사가 공동개발자로 명시된 경우 신기술 개발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개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도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 건관 58812-86 : 2000. 1.2

2) 기술사용료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이 포함된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과 원도급자간 계약이 보호기간 내에 체결되었으나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신기술공종이 보호기간 내에 시공하지 못한 경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은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보호기간 이내에 발주처와 도급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질의요지

- 2003년 설계되어 2006년 하반기 시공예정인 공사의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 「신기술 보호기간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기술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공사계약일로 보아야 함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6.4.

□ 질의요지

- 최초공사 계약 이후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 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으로「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제5조에 의거 보호기간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6.8.1

□ 질의요지

- 물품구매내역의 기자재금액에 신기술사용료가 반영되어 있어도 되는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 등을 말하며,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적용이 가능하나 재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6.11.1

□ 질의요지

-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을 경우에 처음 설계서에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시공사) 또는 발주청 측에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기준은 신기술이 당해 공사에 적용(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어 공사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7.3.8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하였을 경우 신기술사용료 청구가능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4조에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발주청이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한 사유 및 기술사용협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용료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 접수번호 : 2AA-0812-033967, '08.12.1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의 2009년 1월 30일 개정과 관련하여 동 기준의 시행일('09.2.(2) 이전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의 개정에 따른 시행일자와 관계없이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3)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

□ 질의요지

- 설계시기 및 공사입찰 당시에는 신기술 보호기간이었으나, 시공시점에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청은 보호기간 이내에 있는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계약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아울러 기술사용료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질의요지

- 설계시방서에 신기술로 명시되었으나 신기술의 지정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신기술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면 현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기간은 기술사용료 등을 보호해주기 위해 정해 주는 기간으로서 발주청과 원도급사간의 최초계약 이전에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동법령에 의거 보호받을 수 없음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07.1.2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해당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님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8.2.1

□ 질의요지

- 설계서에 신기술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공사에서 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 볼 수 없으나, 설계반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시공사 판단에 따라 신기술공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임

※ 국토해양부 접수번호 : 2AA-0803-045293, '08.3.2

□ 질의요지

- 신기술개발자의 신기술 관련 자재 생산납품시공 지연으로 현장공정에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조치 방법은 무엇인지

☞ 회신내용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4조제3항에 의거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 접수번호 2AA-0806-010320 : '08.6.4

□ 질의요지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없이 배제하는 것의 적법성여부 및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있는지

☞ 회신내용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훈령 제2008-179호, '08.12.2(9)」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현장여건의 변동이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를 심의하여 설계변경하도록 규정 하여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신기술을 보호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8.12.1

□ 질의요지

- 특허공법을 제외하고 건설신기술(이하 신기술)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회신내용

-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허를 포함한 기존 공법과 신기술을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 발주하는 것이 신기술 지정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9.2.3

□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는 어떠한 경우인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조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기술을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5호 따라 비교·분석한 설계검토 사항과 필요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부 훈령 제179호)” 제4조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종합하여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임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9.2.3

4) 신기술 사용 협약

□ 질의요지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증받은 신기술을 발주청에서 ‘갑’만 사용자로서 설계하고 입찰공고문에 신기술번호, ‘갑’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게재함. 낙찰된 회사가 신기술협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자 할 때 ‘갑’이 아닌 ‘을’과 협약하여도 유효한 협약인지 여부

☞ 회신내용

- 복수의 공동 기술개발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공동의 명의로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았을 경우에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그 신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가 공유하는 것임. 이와 같이 기술개발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 공동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개발자 공동 명의로 협약하지 않을 경우에 이의 유효 여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공동 기술개발자간 협약이나 민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공동으로 지정 받은 경우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시 각 개발자의 동의 및 날인이 있어야 협약이 성립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을 공동으로 지정 받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신기술 지정 제도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호내용을 기술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 개발자 사이의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따라서, 기술개발자 중 1인이 기술개발자 이외의 제3자가 신기술을 사용하게 하는 기술사용협약 체결시에는 다른 기술개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협약서에 당사자로서 날인하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

- 기술개발자 중 1인이 직접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법령과 신기술의 활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볼 때 다른 기술개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가능할 것임

※ 국토해양부 접수번호 : 2AA-0901-048161. '09.1.2

5) 입찰 및 계약관련

□ 질의요지

- 신기술 보유자가 신기술관련 해당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경우, 신기술관련 해당공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면허(전문 또는 일반)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시공에 참여(하도급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국토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 접수번호 2AA-0805-065258 : '08.5.2

6) 신기술의 명의변경 및 양도

□ 질의요지

-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갑"과 "을"이 서면으로 모든 사용권리를 "갑"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을"이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자신의 모든 사용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양수받은 권리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건설신기술의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음.
- 건설신기술은 기술개발자 등 당사자간의 기술사용협약 등에 의거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분쟁은 민사법 등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갑)회사와 (을)회사가 공동으로 지정 받았으나, (병)회사가 (을)회사를 흡수합병하면 (을)회사가 지정받은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정자가 (병)회사로 변경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갑)회사의 동의없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 법인 합병되는 경우 소멸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을)회사가 (병)회사로 흡수 합병된다면 (을)회사가 (갑)회사와 공동으로 지정 받은 동 신기술에 대하여 (병)회사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갑)회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양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가능함

7) 신기술 지정 취소

□ 질의요지

- 특허와 신기술과의 기술공법이 동일하기에 특허 취소시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가능한지, 또한 특허와 신기술이 별개의 권리로서 신기술이 보호기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국토부)

- 신기술과 특허는 관련 법·규정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특허가 등록거절, 등록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기술 지정의 취소는 불가하며, 보호기간도 특허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신기술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고시된 대로 신기술 보호기간이 유지됨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6.7.2

□ 질의요지

- 특허 취소에 따른 건설신기술의 지정 무효관계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정해진 심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술보급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하고 있으며, 특허제도는 관련법령과 시행 목적, 지정요건,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이 건설신기술제도와 상이하므로 특허와 신기술간 상호 구속성이 없음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팀-3308 : 2006.9.1

8) 신기술 범위 해석

□ 질의요지

- 공사의 시공 구경(하수관)과 신기술공법의 적용범위가 상이한 경우의 활용실적 인정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신기술의 범위를 벗어나 시공한 경우는 신기술이 적용된 실적으로 볼 수 없음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팀-474 : 2006.2.

□ 질의요지

- 신기술 지정 후 재료의 물성 및 재질이 향상되었을 경우 개선된 물성치를 기존의 신기술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에 재료의 물성 및 재질에 대해 특별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재료명만이 기술되어 있다면 재료의 물성이나 재질의 향상 관련 문제는 신기술의 범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

□ 질의요지

- 신기술 범위에 적용대상이 되는 구조물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그 외의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기술 범위에 제품(재료)을 포함하는 시공방법으로 명시된 경우에 시공이 안된 상태에서 제품(재료)만으로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에 신기술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시공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재료) 자체만으로는 신기술에 의한 시공이 아님

□ 질의요지

- 신기술의 내용을 구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들 경우 신기술 적용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는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기술의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서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기술범위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은 제품이 아닌 건설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 접수번호 : 2AA-0807-011116 : '08.7.4

□ 질의요지

- 신기술 공법 적용시 신기술증명서상의 기술범위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는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기술의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신기술공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신기술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 내에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 접수번호 : 2AA-0807-036308 : '08.7.1

9) 기타

<사후평가>

□ 질의요지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의한 사후평가서 작성 대상은 신기술로 지정된 모든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보호기간 중에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만 적용 하는지

☞ 회신내용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179호)의 제정 취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평가서 작성대상은 공사준공일 기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만 해당함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6.7.2

□ 질의요지

- 총 공사기간이 5년인 건설공사의 경우 사후평가서 작성 및 보고시기가 연차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인지, 아니면 최종 준공 후 1개월 이내(1회)인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이 당해년도 공사(공정)에 포함되어 준공 또는 기성(계속비 사업의 경우)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7.3.2

<신기술 신청, 심사 등>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심사결과 불인정시 재심사 가능여부와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은

☞ 회신내용

- 현행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71호, 2008.12.30)에는 신기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신기술 심사결과 불인정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 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짐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6.6.2

□ 질의요지

- 신기술신청분야에서의 25개 분야와 같이 시공과 관련된 건설기술 등은 신기술 지정이 되고 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건설기술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건설신기술 매뉴얼의 신청분야의 적용분야는

☞ 회신내용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기술이 건설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건설관련 기술이라면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기술이 신기술신청분야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 가에 대하여는 동 기술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국토해양부 전자민원 : '07.3.8

<신기술의 보호 등>

□ 질의요지

-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설신기술의 경우 공공기관 사용시 건설신기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신기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이내에는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님

※ 국토해양부 접수번호 : 2AA-0805-013230, '08.5.7

□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의 신기술 보호기간의 의미와 보호기간이 지난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신기술 우선적용권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법령에서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함

- 따라서, 보호기간이 지난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신기술 우선적용권고를 포함하여 보호대상이 아님

※ 국토해양부 접수번호 : 2AA-0809-009234, '08.9.3

5. 관련서식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나.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서식

다. 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5 관련서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 ☐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기술지정신청서
- ☐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
- ☐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
- ☐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기술활용실적
- ☐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서식]

- ☐ [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의견서
- ☐ [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 ☐ [평가규정 별지 제6호서식] 1차심사평가서
- ☐ [평가규정 별지 제8호서식] 현장실사의견서
- ☐ [평가규정 별지 제9호서식]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 ☐ [평가규정 별지 제10호서식]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 ☐ [평가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각서(이해관계인)
- ☐ [평가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재발급용)

[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 ☐ [매뉴얼 제2호서식]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 ☐ [매뉴얼 제3호서식]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 ☐ [매뉴얼 제5호서식] 홍보용 책자
- ☐ [매뉴얼 제6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 ☐ [매뉴얼 제7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 ☐ [매뉴얼 제8호서식] 신기술 요약자료
- ☐ [매뉴얼 제9호서식] 원가계산서

- □ [매뉴얼 제10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 □ [매뉴얼 제1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내역서
- □ [매뉴얼 제12호서식]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 [매뉴얼 제13호서식] 삭제
- □ [매뉴얼 제14호서식] 건설신기술 예산절감 현황(공사별)
- □ [매뉴얼 제15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대책
- □ [매뉴얼 제16호서식] 건설신기술 영문지정증서
- □ [매뉴얼 제17호서식] 활용실적 서약서(신청인)

[규칙 제16조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12.20> (앞 쪽)

<table>
<tr><td colspan="5">신기술지정신청서</td><td>처리기간
120일</td></tr>
<tr><td>신기술의
명칭</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자</td><td>법 인 명</td><td></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성명(대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우)
(전화번호 :)</td></tr>
<tr><td>신기술내용
(요약)</td><td colspan="5"></td></tr>
<tr><td>신기술의범위</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와 도면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td><td>수수료
신청시 1만원
(수입인지)</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규칙 제18조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12.20>

제 호

신 기 술 지 정 증 서

○ 명 칭 :

○ 개 발 자 :

○ 보호기간 :

○ 기술개요 :

○ 기술범위 :

○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210㎜×297㎜
(인쇄용지(2급) 120g/㎡)

[규칙 제18조 관련,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12.20>

신기술지정증서재발급신청서

신청인	상 호			
	소재지	(전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지정번호			지정일자	
신청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210㎜×297㎜
(인쇄용지(2급) 60g/㎡)

[규칙 제19조 관련,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12.20>

(앞 쪽)

신 기 술 활 용 실 적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신기술의 명칭 및 지정번호 :

① 일련번호	② 공사명	③ 발주처명	※④ 업태분류	※⑤ 발주처분류	※⑥ 기술분야	※⑦ 지역	※⑧ 계약형태	※⑨ 계약관계	※⑩ 활용형태	⑪ 계약연월일	⑫ 착공연월일	⑬ 준공연월일	⑭ 당해연도계약액또는 이 월 금 액	⑮ 당해연도 활용금액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천원	

구비서류

1. 건설공사의 경우
 가. 발주청이 발행하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요령

1. 일련번호는 신기술별로 기재합니다.
2. ※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의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3. 전년도 미기성액부터 작성하고, 당해연도 계약분을 계약일자순으로 기재하고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4. 당해연도 활용금액은 발주처 공급자재액을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규칙 제19조 관련,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12.20>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	②대표자	
	③본사 소재지			
	④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용 역 내 용
(※ 신기술 활용지위가 설계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⑤용 역 명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⑥용역계약금액	⑧용역기간
	⑦용역지분율	
	천원	~
	%	

공 사 내 용

⑨신기술 지정번호	⑩발주 형태	⑪공 사 명

⑫계약일	⑬착공일	⑭준공 (예정)일	⑮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	⑰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	⑲해당 연도 신기술기성실적
			⑯해당 공사 신기술적용금액	⑱해당 연도 신기술적용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수급인)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전화번호

[비 고]
1. ⑩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민간공사(8), 기타(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2. ⑯, ⑱의 신기술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3. 실적 증명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규칙 제23조 관련,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12.20> (앞 쪽)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의 명칭	(건설신기술 제 호)			
신청인 (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전화 :)		
신기술 내용 (요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1만원 (수입인지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평가규정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의견서

	법인명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 a x) e-mail)	주 소	
신청기술	명 칭			
	신청인			
이해관계 의견	○ 이해관계인의 기술내용 및 원리 ○ 이해관계 : 모방 □, 도용 □, 기술침해로 인한 분쟁 □ (해당부분에 ☑) (☑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술) 1. 2. 3. 4. ○ 심사위원회 제시할 의견 요약 1. 2. 3. 4.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이해관계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해관계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장 귀 하

【평가규정 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신청기술	명 칭	(관리번호 :)
	범 위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의 견 (요약)		
답변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신기술의평가규정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장 귀 하

【평가규정 제9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1차심사평가서

(지정신청 서면심사)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 기술분야 평가

○ 신청기술이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에 해당함	**□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 검토 의견

본인은 신청 기술의 분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명 : (서명)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 의견 회신 결과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민원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2. 심사 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신규성 (40)	기존기술과 차별성	/15	
	개량 정도	/15	
	독창성과 자립성	/10	
진보성 (40)	품질 향상	/20	
	공사기간 단축	/10	
	첨단기술성	/10	
경제성 (20)	설계·시공비 절감	/10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10	
계		/100	□ 1차 인정(70점 이상) □ 불인정

※ 녹색인증 기술 및 국가R&D 결과물은 첨단기술성에 10점 부여

3. 현장실사 실시여부 및 방법 검토(1차 인정시에만 작성)

<table>
<tr><td>가. 현장실사
실시여부</td><td colspan="2">☐ 찬성 ☐ 반대</td></tr>
<tr><td colspan="3"><판단 이유></td></tr>
<tr><td colspan="3">나. 실사 현장 및 실사 시기</td></tr>
<tr><td colspan="3">☐ 실사 현장 :

☐ 실사 시기 :</td></tr>
<tr><td colspan="3">다.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신청서에 제시된 Check List 항목을 검토후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 기재</td></tr>
<tr><td>신청기술의
현장적용 여부</td><td colspan="2"></td></tr>
<tr><td>품질검증방법 및
결과</td><td colspan="2"></td></tr>
<tr><td>시방서 및 유지
관리지침서와의
일치 여부</td><td colspan="2"></td></tr>
<tr><td>구조적 안정성</td><td colspan="2"></td></tr>
</table>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평가규정 제11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현장실사의견서(지정신청)

○ 실사일자 :
○ 신청기술 명칭 :

1.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나. 품질검증 방법 및 결과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라. 구조적 안정성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2. 품질검사의 필요 여부

품질검사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품질검사가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항목 및 그 필요사유 기술		

3. 종합의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사위원 성명 : (서명)

현장실사의견서(연장신청)

○ 실사일자 :
○ 신청기술 명칭 :

1.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가. 현장적용 내용이 신기술의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나. 품질검증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2. 품질검사의 필요 여부

품질검사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가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항목 및 그 필요사유 기술		

3. 종합의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사위원 성명 : (서명)

【평가규정 제13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의견 및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의견회신 결과 검토	
민원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현장실사(품질검사) 결과 검토	

2. 심사 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현장 적용성 (70)	시공성	/20	
	안전성	/20	
	구조안정성	/15	
	유지관리 편리성	/15	
보급성 (30)	시장성	/15	
	공익성	/15	
계		/100	□ 2차 인정(70점 이상) □ 불인정

3. 신기술 지정분야, 명칭 및 범위의 조정

신기술 지정 분야	
신기술의 명칭	
신기술의 범위	

※ 인정시에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평가규정 제14조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의견회신 결과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민원)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현장실사(품질검사) 결과 검토	

2. 심사 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활용실적 (30)	활용건수 및 금액	30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	15	
	품질검증	15	
	경제성	15	
	시장성	5	
	안전성	10	
	기술개량	5	
	권고사항 이행여부	5	
가점 (10)	사후평가결과	5	
	해외활용실적	3	
	기술보급노력	2	
계		100	□ 보호기간연장 인정(40점 이상) □ 불인정

3. 신기술의 지정분야 및 범위 조정

지정분야	
범위조정	□ 필요 □ 불필요
※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안 및 사유 기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평가규정 제7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각　　서(이해관계인)

본인은　　가(이) 신기술지정(또는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한 기술(신청기술명(신기술명):　　)에 대하여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 신기술지정 신청서(또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정히 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의 동의 없이 동 신청서를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의견 제출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주　소(소재지)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성　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귀하

※ 신청서 수령자가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증서 첨부

【평가규정 제19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신 기 술 지 정 증 서

○ 명 칭 :
○ 개 발 자 :
○ 보호기간 :
○ 기술개요 :
○ 기술범위 :
○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분실, 훼손, 개발자 변경 등에 따라 재발급된 증서입니다.

30307-08811일
97.9.5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120g/㎡)

[매뉴얼 제2호서식]

국토해양부 공고 제0000-000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나. 전화번호 :

2. 명칭 :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범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 031-389-648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이외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매뉴얼 제3호서식]

국토해양부 공고 제0000-00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 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나. 전화번호 :

2. 지정번호 :

3. 명칭 :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범위>

5. 보호기간 :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 031-389-648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이외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매뉴얼 제5호서식]

홍보용 책자

(측면)

신기술지정 제000호

신 기 술 명 칭

(크기 1(4)

2 0 0 ○ .

(크기(10)

□ 기 술 개 발 자 □

(크기1(2)

(전면)

신기술지정 제000호(크기11, 진하게)

지정 분야	

(좌측상단, 상부여백4㎝)

신 기 술 명 칭

(크기30, 진하게)

200○. ○ **(지정년도, 월, 크기1(5)**

(기술개발자:○ ○ ○)

(크기20, 하부여백 5㎝)

※ 보호기간연장의 경우 '연장시의 연도, 월'로 작성하기 바람

[신기술지정 홍보용책자 목차]

※ 목차 앞에 국토해양부에서 발급한 '신기술지정증서' 사본 첨부

목 차

(글자크기 20P 신명조 진하게)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1) 기술개발 환경

2) 기술개발 목표

3) 기술개발 과정

4) 기술개발 연혁 및 관계자

나. 신기술의 내용

1) 기술의 분야

2) 기술의 내용 요약

3) 기술의 성능 및 검증 결과

다. 신기술의 범위

1)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2. 1차 심사 기준 설명서

가. 신규성

1)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2) 개량 정도

3) 독창성과 자립성

나. 진보성

1) 품질 향상

2) 공사기간 단축

3) 첨단기술성

다. 경제성

1) 설계·시공비 절감

2)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3. 현장실사

가. 현장적용 실적

나. 현장실사 내용 요약

4. 2차 심사 기준 설명서

가. 현장적용성

1) 시공성

2) 안전성

3) 구조안정성

4) 유지관리편리성

나. 보급성

1) 시장성

2) 공익성

5. 신기술시방서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술 사용 자격

8. 부 록1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라.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마.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바. 기타 증빙자료

부 록2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부 록3 원가계산서

※ 홍보용 책자는 제본하지 않음(전자문서로만 제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홍보용책자 목차]

※ 목차 앞에 국토해양부에서 발급한 '신기술지정증서' 사본 첨부

목 차

(※글자크기 20P 신명조 진하게)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1) 기술개발 환경

2) 기술개발 목표

3) 기술개발 과정

4) 기술개발 연혁 및 관계자

나. 신기술의 내용

1) 기술의 분야

2) 기술의 내용 요약

3) 기술의 성능 및 검증 결과

다. 신기술의 범위

1)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3) 범위 변경(해당시)

2.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 설명서

가. 활용실적

1) 활용 건수 및 금액

2) 활용실적 분석

나. 기술의 우수성
1) 기술수준
2) 품질검증
3) 경제성
4) 시장성
5) 안전성
6) 기술개량
7) 권고사항 이행여부

다. 가점, 감점 등
1) 사후평가 결과
2) 해외 활용실적
3) 기술보급 노력
4) 감점 해당 여부

3. 현장실사 계획
가. 현장적용 실적
나. 현장실사 내용 요약

4. 지식재산권 내역
가. 지정신청시 내역
나. 보호기간 동안 변경된 내역

5. 신기술시방서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술 사용 자격

<별책 1 : 부록>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라.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 증빙자료

마.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바. 보호기간 연장 가점 증빙(해외실적, 홍보실적 등)

사. 기타 증빙자료

(후면)

안 내

본 신기술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신기술 관련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자 : ○ ○ ○ ○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Tel. 031-000-0000 Fax. 031-000-0000

책자열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ct.kictep.re.kr)

Tel. 031-389-6481~7 Fax. 031-381-4994

[매뉴얼 제6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 신청기술명칭(신기술명칭) :

□ 심사 일시 :

□ 참석자 명단 :

성 명	소 속 기 관	직위	기술개발참여내역	연락전화번호 (HP)

※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단독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5인 이내(개인 단독인 경우 본인만 참석 가능)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신청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인감 날인) 제출
- 신청인이 6개 법인 이상 공동인 경우 5명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신청기술의 개발에 관여한 외부인(연구용역, 특허발명 등)은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정원 외 참석 가능. 다만, 발표는 불가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가능
- 외부고문, 자문위원 등 제3자 참석 불허
- 직위란 직무 및 직책상의 지위를 말함(예 : 과장, 부장, 사장 등)

[매뉴얼 제7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 신청기술명칭(신기술명칭) :

□ 신청인 :

□ 심사 일시 :

□ 참석자 명단 :

성 명	소 속 기 관	직위	이해관계 내역	연락전화번호 (HP)

※ 작성시 유의사항

- 이해관계인이 단독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3인 이내(개인 단독인 경우 본인만 참석 가능)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이해관계 의견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 제출
- 이해관계인이 4개 법인 이상 공동인 경우 3명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외부고문, 자문위원 등 제3자 참석 불허

[매뉴얼 제8호서식]

신기술 요약자료

(제○○○○호) 신기술지정 정식명칭
(※ 글자크기 16, 신명조 진하게)

■ **기술개발자 : (주)○○○(대표이사 ○○○)**

■ **주　　소 : 서울시 ○○구 ○○동 9-3 (Tel. 02-○○○○-○○○○)**

■ **홈페이지 : http://○○○.○○○.○○○(이메일 : ○○○@○○○.○○○)**

■ **보호기간 : 20○○. ○○. ○○ ~ 20○○. ○○. ○○(○년)**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2) 내용

※ 보호기간, 범위, 내용은 지정증서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보호기간은 지정 이후 대한민국전자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5년간임.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신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개념도, 상세도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시공절차별로 시공방법을 기술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 *신기술로 적용된 현장에 대해 발주처, 시공규모, 기간, 위치, 특징 등을 표로 정리하여 기술(활용실적이 많은 경우 연도별, 지역별 등으로 요약)*

나. 향후 활용전망

※ *국내외 여건, 기술의 시장성, 활용가능분야 등을 고려하여 향후 활용전망을 기술*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신기술의 핵심내용과 최근 많이 알려진 유사기술의 성능, 기능 등을 요약 설명하되, 신기술과 유사기술을 비교하여 신기술의 수준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기술*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기존 시장에서 신기술이 보급될 가능성 및 동종분야 기술수준을 선도 또는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할 가능성 등을 기술*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국내외 기술 대비 장점, 외국기술 대체 및 기술수출 가능성, 예상 해외시장 수요 및 기술료 수입 규모 등 기술*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 *원가계산에 의한 설계단가를 기술*

2) 공사비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공사비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술(가급적 표로 제시)*

3) 공사기간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술(가급적 표로 제시)*

4) 유지관리비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내구성, 수명연장, 안전성 증대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 또는 생애주기비용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술(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술)*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 *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기대효과를 기술(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술)*

※ 본 자료는 평가원 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 게재되고, 요약서를 모아 책자로 제작하여 발주처 및 정부기관에 배부하거나, 각종 전시회 등에 비치하여 활용됩니다. 따라서 신기술지정(연장)신청서, 원가계산서, 선행 건설기술조사결과서 등을 참고하여 홍보용으로 사용 가능토록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4페이지 이내)

[매뉴얼 제9호서식]

원 가 계 산 서

<측면>

원
가
계
산
서
크기
16

2
0
0
0
○
.
○
(크기(10
)

<전면>

원 가 계 산 서
(크기30)

(명칭:○ ○ ○ ○ ○)
(크기1(8)

(신청인:○ ○ ○ ○ ○)
(우측여백3㎝, 크기1(3)

200○. ○ (신청년도, 월, 크기1(5)

(조사기관 : ○ ○ ○)
(크기20, 하부여백 5㎝)

[매뉴얼 제10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1. 회사개요

신고업체 구분	기술개발자	□	기술사용자	□		
법인명 (성 명)			대 표 자		사업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업태분류		전 화			팩 스	
주 소	(홈페이지)					
벤처 등록 여부	□		벤처지정 유효기간		~	

2. 건설신기술 신고 현황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지정일자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 명칭					

3.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총괄)

총 활용건수	건	총 활용금액	천원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작성요령)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는 신기술 지정건별에 대한 활용실적을 각각 양식에 맞혀 작성한다.
2. □ 은 V으로 표시한다.
3. **※업태분류**는 별첨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코드작성 요령**을 찾아 기재한다.
4.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총괄은 지정건에 대한 총 활용건수와 총 기성금액을 기재한다.
5. 활용실적이 없는 건설신기술은 활용금액란에 **"활용실적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첨 부)

1.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2. 신기술 활용실적(기성실적 내역서)
3. 기술사용협약서(기술사용자에 한함)

[매뉴얼 제1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내역서

(기성실적 내역서)

지 정 번 호	
기술개발자 또는 사용자	
대 표 자	㊞

① 일련번호	② 공사명	③ 발주처명 ④ 원도급자명	※⑥ 발주자분류	※⑦ 기술분야	※⑧ 지 역	※⑨ 계약형태	※⑩ 계약관계	※⑪ 활용형태	⑫ 계약년월일	⑬ 착공년월일	⑭ 준공년월일	⑮ 당년도 기성금액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소) 계												천원	

※란은 반드시 **"신기술활용실적신고 코드작성요령"**을 찾아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한다.

[매뉴얼 제12호서식] 예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지식재산권 목록

1.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2.

3.

본인은 위 지식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가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건설신기술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며, 신기술 지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

○○○건설㈜

대표이사 인

[매뉴얼 제13호서식] 삭제

[매뉴얼 제14호서식]

건설신기술 예산절감 현황(공사별)

(단위 : 백만원)

지 정 번 호	개 발 자	신기술 활용금액	일반공법 적용금액	절 감 액	공사내용

※ 기재요령

1. 신기술지정(기술별)별로 절감액을 기재한다.
2. **신기술 활용금액**은 협회에 신고한 **기술별 총 활용금액**으로 기재한다.
3. **일반공법 적용금액**은 지정받은 신기술과 대비되는 일반공법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산출된 공사금액을 기재한다.
4. **절감액**은 일반공법 적용금액 대비 신기술 활용금액에 대한 절감액을 기재한다.
5. **내용**에는 신기술 활용금액에 대한 일반공법 산출 근거자료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매뉴얼 제15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대책

- 상 호 :
- 신기술지정번호 :

구 분	내 용
분 석 (부진사유 등)	
대 책	

※ 기록내용이 많으면 별지를 첨부하십시오.

[매뉴얼 제16호서식]

건설신기술 영문지정증서

No.OOO

New Excellent Technology (NET) Certificate

Title :

Developer :

Period of Protection : O years (Oct OO, 20OO~Oct OO, 20OO)

Description of Technology

『

』

Scope Of Technology

『

』

Contents to be Protected

- The developer is authorized to receive royalties from others for using NET
- It is recoㅁㅁended to use NET prior to the similar technology
- The ordering authority may be encouraged to test the equipment or to construct experimentally in regard of NET
- When the test and the experimental construction for NET result in excellent performance, the ordering authority may apply NET preferentially

In compliance with provision of Article 18 of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I hereby designate above the technology as a NET.

October OO, 20OO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매뉴얼 제17호서식]

활용실적 서약서(신청인)

□ 신 청 인 :

□ 신청기술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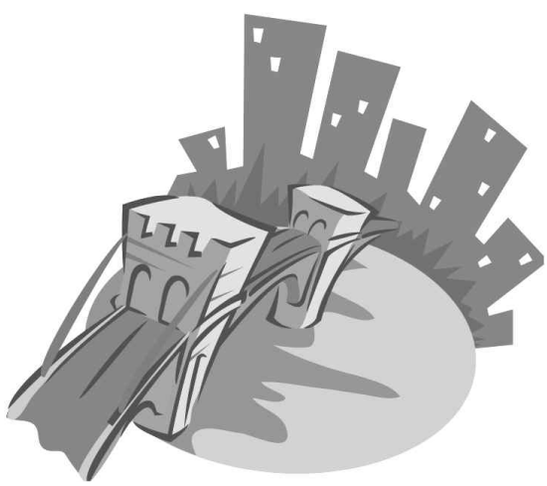
본인은 상기 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연장신청 포함)시 제출된 활용실적 관련 사항(건수, 적용범위, 적용내용, 사실 증명 등)이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하며, 향후 활용실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보호기간 연장) 취소, 신청서 반려, 신기술신청 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일자 :

신청인 : (서명)

6 신기술유사기술분류표('12.9.28. 기준)

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음



6 신기술 유사기술분류표('12. 9. 30 기준)

2012년 9월 30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A 토목	01. 도로	01. 도로 구조 설계	01. 도로 지반고 추출	157(도로지반고추출)	1					1
			02. 도로 시거 산정	228(도로시거산정)	1			52(도로및철도종단선형설계)	1	2
		02.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01. 콘크리트 포장	67(콘크리트포장), 106(콘크리트포장), 139(콘크리트포장), 262(콘크리트무늬포장)	4	607(콘크리트포장)	1			5
			02. 도로용 개량 콘크리트 재료	190(도로용개량콘크리트재료)	1					1
			03. 반강성 포장	499(반강성포장)	1					1
			04. 콘크리트 포장 보수	37(콘크리트포장보수)	1	615(콘크리트포장보수), 665(콘크리트포장보수), 637(콘크리트포장보수)	3			4
		03.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01. 아스팔트 보강재료	9(아스팔트보강재료), 12(아스팔트보강재료)	2					2
			02. 아스팔트 순환 골재	117(아스팔트순환골재), 192(아스팔트순환골재), 205(아스팔트순환골재)	3					3
			03. 아스팔트 배합 설계	236(아스팔트배합설계)	1					1
			04. 아스팔트 포장	21(아스팔트포장(아스콘)), 42(아스팔트포장(표층)), 220(아스팔트포장(보수재료)), 263(아스팔트포장(반강성)), 391(아스팔트포장(표층))	5					5
			05. 아스팔트 포장 유지보수	321(아스팔트포장보수), 468(아스팔트포장보수)	2	501(아스팔트포장보강), 547(아스팔트포장보수)	2			4
			06. 개질 아스팔트	48(개질아스팔트), 196(개질아스팔트), 206(개질아스팔트), 277(개질아스팔트)	4					4
			07. 보도용 표층 포장	41(보도용표층포장)	1					1
			08. 스팀분사다짐	502(스팀분사다짐)	1					1
		04. 도로기층	01. 도로기층포장	17(도로기층포장), 328(도로기층포장)	2					2
			02. 도로노반처리	168(도로노반처리)	1					1
			03. 기타 포장 재료	203(흙포장재료)	1					1
		05. 교면포장	01. 교면배수	125(교량배수)	1					1
			02. 교면방수	364(교면방수)	1					1
			03. 교면포장	320(교면포장), 322(교면포장)	2	495(교면포장)	1			3
			04. 교면포장보수			427(교면포장보수), 562(교면포장보수)	2	637(교면포장보수), 665(교면포장)	2	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06. 도로안전시설	01. 차량충격흡수시설	316(차량충격흡수시설), 423(차량충격흡수시설), 496(차량충격흡수시설)	3	571(차량충격흡수시설)	1			4
			02. 중앙분리대	96(중앙분리대)	1					1
			03. 가이드레일	101(가이드레일), 380(차량방호울타리), 388(차량방호울타리)	3					3
			04. 가설용안전보호벽	118(가설용안전보호벽)	1					1
			05. 낙석방지책	184(낙석방지책), 207(낙석방지책), 361(낙석방지책), 487(낙석방지책)	4					4
			06. 낙석방지망	421(낙석방지망)	1					1
			07. 재귀반사체	58(재귀반사체)	1					1
			08. 차선규제봉	61(차선규제봉)	1					1
			09. 도로표지병	105(도로표지병), 162(도로표지병), 372(도로표지병)	3					3
			10. 노면표지	231(노면표지), 458(노면표지)	2	554(노면표지), 570(노면표지), 666(차선도색)	3			5
			11. 광섬유안전 표지장치	189(광섬유안전표지장치)	1					1
			12. 미끄럼방지 포장	78(미끄럼방지), 122(미끄럼방지), 344(미끄럼방지), 346(미끄럼방지)	4	557(미끄럼방지)	1			5
		07. 방음벽	01. 방음벽	188(방음벽), 199(방음벽), 355(방음벽), 414(방음벽)	4					4
			02. 방음벽 기초	407(방음벽기초)	1					1
		08. 도로 경계석	01. 도로 경계석	25(도로경계석), 482(도로경계석)	2	620(도로경계석)	1			3
		09. 맨홀	01. 맨홀보수	15(맨홀보수), 135(맨홀보수), 244(맨홀보수), 265(맨홀보수), 276(맨홀보수), 293(맨홀보수), 428(맨홀보수), 429(맨홀보수)	8	622(맨홀보수)	1			9
			02. 맨홀거푸집	68(맨홀거푸집)	1					1
		10. 기타 도로 시설	01. 가로등 기초	455(가로등기초)	1					1
	02. 철도	01. 철도궤도 설계	01. 철도 종단선형설계	52(도로및철도종단선형설계)	1					1
			02. 철도궤도 설계	224(철도궤도설계)	1					1
		02. 궤도	01. 철도 궤도			543(철도궤도)	1			1
			02. 철도 침목	248(철도침목)	1					1
			03. 분기기 및 신축이음	225(분기기 및 신축이음)	1					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04. 콘크리트 궤도 포장			573(콘크리트궤도포장)	1			1
			05. 전동차 패널 설치			588(전동차패널설치)	1			1
			06. 레일 직결 체결장치			589(레일직결체결장치)	1			1
		03. 철도시스템운영								
		04. 신호 및 제어								
		05. 철도 유자보수보강								
		06. 철도 차량								
		07. 기타 철도시설								
	03. 항만 및 해안	01. 준설 및 매립								
		02. 항만 및 해안 구조물	01. 콘크리트 케이슨	444(콘크리트케이슨)	1	616(케이슨기초그라우팅), 639(해양콘크리트)	2			3
		03. 수중 구조물				654(해수취수시설)	1			1
		04. 항만 부속 시설	01. 호안조성	241(호안조성), 475(호안조성)	2					2
		05.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01. 강구조물 방식	144(강구조물 방식)	1					1
			02. 해상구조물 방식	212(해상구조물방식)	1	601(해상구조물방식)	1			2
		06. 방파제	01. 방파제 제작			566(방파제 제작)	1			1
		07. 기타 항만 및 해안 시설	01. 대형평바지연결	64(대형평바지연결)	1					1
	04. 상·하수도	01. 관로 설계 및 프로그램	01. PCC관 설계	170(PCC관설계)	1					1
		02.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01. 수도관 체결기구	315(수도관체결기구)	1					1
			02. 강관배관	267(강관배관), 378(강관배관), 438(강관배관)	3	610(강관배관)	1	664(강관배관이음)	1	5
			03. 상수관보수	76(상수관보수), 88(상수관보수), 354(상수관보수), 385(상수관보수)	4	497(상수관보수), 565(상수관보수), 669(상수관보수)	3			7
			04. 상수관세관			526(상수관세관)	1			1
			05. 상수관 내부검사			584(상수관내부검사)	1			1
		03.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01. 하수관 본관 배관	27(하수관본관배관), 214(하수관본관배관), 219(하수관본관배관), 412(하수관본관배관), 484(하수관본관배관)	5					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02. 하수관 가지관 접합	242(하수관가지관접합)	1					1
			03. 하수관 지장물 제거	275(하수관지장물제거)	1					1
			04. 하수관 보수	34(하수관보수), 53(하수관보수), 63(하수관보수), 70(하수관보수), 148(하수관보수), 285(하수관보수), 319(하수관보수), 389(하수관보수), 409(하수관보수), 456(하수관보수)	10	401(하수관보수), 492(하수관보수), 581(하수관보수), 624(하수관보수), 636(하수관보수)	5			15
			05. 오수차집 시설	47(오수차집시설), 443(오수차집시설)	2					2
		04. 상수 처리	01. 정수시설	35(정수시설), 83(정수시설), 180(정수시설), 306(정수시설), 384(정수시설), 397(정수시설)	6	605(정수시설)	1			7
			02. 활성탄 재생	109(활성탄재생)	1					1
			03. FRP원형 밸브실	215(FRP원형밸브실)	1					1
		05. 하수 처리	01. 하수처리	13(하수처리), 24(하수처리), 46(하수처리), 72(하수처리), 73(하수처리), 95(하수처리), 99(하수처리), 103(하수처리), 108(하수처리), 111(하수처리), 113(하수처리), 114(하수처리), 128(하수처리), 145(하수처리), 147(하수처리), 153(하수처리), 159(하수처리), 164(하수처리), 165(하수처리), 171(하수처리), 181(하수처리), 194(하수처리), 195(하수처리), 197(하수처리), 210(하수처리), 230(하수처리), 237(하수처리), 251(하수처리), 255(하수처리), 256(하수처리), 272(하수처리), 278(하수처리), 289(하수처리), 303(하수처리), 339(하수처리), 342(하수처리), 377(하수처리), 379(하수처리), 382(하수처리), 494(하수처리)	40					40
			02. 하수슬러지처리	6(하수슬러지처리), 62(하수슬러지처리), 65(하수슬러지처리), 137(하수슬러지처리), 383(하수슬러지처리)	5					5
			03. 발효조 막힘방지	97(발효조막힘방지)	1					1
			04. 하수 분뇨 악취제거	160(하수분뇨악취제거)	1					1
			05. 하수 집수장치	175(하부집수장치)	1					1
			06. 하수 오폐수 수집			555(하수오폐수수집)	1			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06. 상하수도 오니준설	01. 하수준설	4(하수준설), 71(하수준설), 142(하수준설), 314(하수준설), 340(하수준설)	5					5
			02. 유수지준설	10(유수지준설), 11(유수지준설), 44(유수지준설), 308(유수지준설)	4					4
		07. 기타 상하수도 시설	01. 상수도구조물방수	466(상수도구조물방수)	1					1
	05. 수자원	01.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02. 호안조성	01. 호안조성	33(호안조성), 56(호안조성), 130(호안조성), 167(호안조성), 182(호안조성), 185(호안조성), 216(호안조성), 325(호안조성)	8					8
		03. 댐								
		04. 보	01. 가동보설치	92(가동보설치)	1	564(가동보설치), 651(가동보설치), 668(고무보)	3			4
		05. 하천 수질 정화 시설	01. 하천수질정화	45(하천수질정화), 223(하천수질정화), 469(하천수질정화)	3					3
		06. 지하수 및 관리	01. 지하수 관리	286(지하수 관리)	1					1
		07. 기타	01. 하상 저니 시료채취	100(하상저니시료채취)	1					1
			02. 부두 차막이 시설	119(부두차막이시설)	1					1
			03. 폰툰 위치고정	172(폰툰위치고정)	1					1
	06. 교량	01. 교량 설계 및 구조	01. PSC인장	66(PSC인장)	1					1
			02. 교량설계	271(교량설계)	1	672(파형강판)	1			2
			03. 보도교진동저감	442(보도교진동저감)	1					1
			04. 교량상부구조물 인양	538(교량상부구조물인양)	1					1
			05. 사장교안정			613(사장교안정)	1			1
		02. 교량 상부구조물	01. 교량상판	81(교량상판), 90(교량상판), 309(교량상판)	3					3
			02. 바닥판	374(교량바닥판), 405(교량바닥판), 464(교량바닥판)	3	553(교량바닥판)	1			4
			03. 교량상판접착	186(교량상판접착)	1					1
		03. 교량받침	01. 교량받침	136(교량받침), 229(교량받침), 260(교량받침), 283(교량받침), 398(교량받침), 437(교량받침)	6	545(교량받침)	1			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04. 교량거더	01. 박스거더	143(박스거더), 366(박스거더교)	2	561(박스거더교)	1			3
			02. 합성거더	77(합성거더(토목)), 297(합성거더(토목)), 371(합성거더), 488(합성거더)	4	542(합성거더), 574(합성거더), 646(합성거더)	3			7
			03. PSC거더	221(PSC거더(토목)), 247(PSC거더), 270(PSC거더), 399(PSC거더(철도)), 524(PSC거더)	5	582(PSC거더(토목)), 603(PSC거더(토목)), 648(PSC거더(토목))	3			8
			04. 교량연속화			453(교량연속화), 517(교량연속화), 595(다경간일체화)	3			3
		05. 가설시설물	01. 가설교량	31(가설교량), 304(가설교량)	2	531(가설교량), 551(가설교량), 585(가설교량), 671(가물막이)	4			6
			02. 가설발판	408(교량가설발판)	1					1
		06. 교량 부속 시설물	01. 교량신축이음	2(교량신축이음)	1	552(교량신축이음장치), 627(교량신축이음장치)	2			3
			02. 철근커플러이음			519(교각주근커플러이음)	1			1
			03. 방호울타리	294(교량용방호울타리)	1					1
		07. 교량 유지·보수	01. 보강	23(교량보강), 55(교량보강), 104(교량보강), 132(교량보강), 343(교량보강(토목)), 400(교량보강(교량)), 445(교량보강)	7					7
		08. 기타 교량시설								
	07. 터널	01. 터널 구조 및 설계	01. 변위측정	348(터널내공변위측정)	1					1
			02. 이격거리산정	498(터널발파이격거리산정)	1					1
		02. 터널 구조물 설치	01. 터널시공	82(터널시공), 238(터널시공), 299(터널시공), 335(터널시공)	4	594(터널시공)	1			5
			02. 세그먼트 연결	43(터널용세그먼트연결), 87(터널용세그먼트연결)	2					2
		03. 터널 보강 안정	01. 록볼트	60(록볼트), 300(록볼트), 69(록볼트), 523(록볼트)	4					4
			02. 그라우팅	259(터널라이닝배면그라우팅)	1	441(터널숏크리트)	1			2
		04. 터널 굴착(발파)	01. 터널발파	14(터널발파), 232(터널발파), 341(터널발파), 459(터널발파)	4	518(터널발파), 521(터널발파)	2			6
		05. 터널방수	01. 시트방수	369(터널시트방수)	1					1
		06. 터널 유지보수								
		07. 터널환기시설	01. 발파먼지저감			602(발파먼지저감)	1			1
		08. 기타 터널시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08. 토질 및 기초	01.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01. 재하시험	3(재하시험), 266(재하시험)	2	656(말뚝재하시험)	1			3
			02. 지반환경조사	440(지반환경조사)	1	635(지반환경조사)	1			2
			03. 지반계측	150(계측)	1	539(연약지반침하측정), 575(계측), 643(지반침하자동계측)	3			4
			04. 시료채취	173(불교란시료채취), 254(불교란시료채취)	2					2
		02. 지반 개량 및 보강	01. 표층처리	16(연약지반표층처리), 127(연약지반표층처리), 368(연약지반표층처리), 390(연약지반표층처리)	4			470(침하구조물복원)	1	5
			02. 지반개량	38(연약지반개량), 213(연약지반개량), 227(연약지반개량), 269(연약지반개량), 415(연약지반개량)	5	532(연약지반개량), 568(연약지반개량), 592(연약지반개량), 600(팽이말뚝), 644(지반차수·보강 개량)	5			10
			03. 기둥체조성	357(지반개량기둥체조성)	1					1
			04. 해저지반보강	290(해저연약지반보강), 420(해저연약지반보강)	2					2
			05. 그라우팅			650(그라우팅 지반 보강), 652(그라우팅 앵커), 662(그라우팅 지반 보강)	3			3
		03. 지반 굴착	01. 암반파쇄	20(암반파쇄), 50(암반파쇄), 226(암반파쇄), 336(암반파쇄)	4					4
			02. 자유면발파	124(자유면발파), 312(단일자유면발파)	2					2
		04. 말뚝(Pile)	01. 기성말뚝시공	22(기성말뚝시공), 446(기설말뚝시공)	2					2
			02. 현장타설말뚝	512(현장타설말뚝)	1	510(현장타설말뚝), 556(현장타설말뚝)	2			3
			03. 해상말뚝	112(해상말뚝), 152(해상말뚝 위치제어)	2					2
			04. 말뚝 연결	425(콘크리트말뚝연결)	1					1
			05. 말뚝절단	156(강관말뚝절단), 279(강관말뚝절단)	2					2
			06. 말뚝두부보강	134(강관말뚝두부보강), 307(강관말뚝두부보강), 373(강관말뚝두부보강), 387(강관말뚝두부보강)	4	597(강관말뚝두부보강)	1			5
		05. 토목 지중 구조물	01. 복개아치구조물	40(복개아치구조물)	1					1
			02. PC암거제작설치	151(PC암거제작설치), 202(PC암거제작설치)	2	606(PC구조물커플러이음)	1			3
			03. 비개착구조물	426(비개착지하구조물축조)	1	567(비개착지하구조물축조), 572(비개착지하구조물축조)	2			3
			04. 배수로	356(배수로), 395(배수로)	2					2
		06. 흙·물막이공	01. 흙막이가시설	131(흙막이가시설), 249(흙막이가시설), 448(흙막이가시설), 480(흙막이가시설)	4	433(흙막이가시설), 491(흙막이가시설), 533(흙막이가시설), 612(흙막이가시설), 614(흙막이가시설), 640(흙막이가시설), 645(흙막이가시설)	7			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02. 침출수차단	19(매립지차수), 93(매립지차수), 200(매립지차수), 402(구조물및암반차수)	4					4
			03. 가물막이	183(가물막이), 291(가물막이), 483(가물막이)	3	559(차수그라우팅)	1			4
		07. 사면 관리 및 보강	01. 사면보강	250(사면보강), 287(사면보강), 449(사면보강)	3					3
			02. 쏘일네일링	257(쏘일네일링), 370(쏘일네일링), 479(쏘일네일링)	3	474(쏘일네일링), 529(쏘일네일링), 530(쏘일네일링), 540(쏘일네일링), 598(쏘일네일링)	5			8
			03. 성토다짐	352(성토다짐)	1					1
		08.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01. 보강토옹벽	8(보강토옹벽), 187(보강토옹벽), 324(보강토옹벽)	3	504(보강토옹벽), 657(보강토옹벽)	2			5
			02. 프리캐스트옹벽	431(프리캐스트옹벽)	1	490(프리캐스트옹벽), 513(프리캐스트옹벽)	2			3
			03. 파형강판구조체 옹벽			549(파형강판구조체옹벽)	1			1
		09. 기타 토질 및 기초 시설	01. 폐기물매립지	327(폐기물매립지안정화)	1					1
	09. 조경	01. 사면녹화	01. 비탈면녹화	1(비탈면녹화), 28(비탈면녹화), 32(비탈면녹화), 49(비탈면녹화), 193(비탈면녹화), 201(비탈면녹화), 332(비탈면녹화), 333(비탈면녹화), 411(비탈면녹화), 434(비탈면녹화)	10	461(비탈면녹화), 503(비탈면녹화)	2			12
		02. 식재조성	01. 식생조성	310(식생조성), 360(식생조성)	2					2
		03. 수목지지	01. 수목지지	243(수목지지)	1					1
		04. 기타 조경시설	01. 잔디시공	74(잔디시공)	1					1
	10. 측량	01 수치지도	01. 수치지도제작	155(수치지도제작), 447(수치지도제작)	2					2
		02. 하천측량	01. 준설관리	252(준설관리시스템)	1					1
		03. 기타 측량								
	11.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01.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01. 보수	209(콘크리트구조물보수), 331(콘크리트구조물보수), 359(콘크리트구조물보수), 363(콘크리트구조물보수), 419(콘크리트구조물보수), 430(콘크리트구조물보수), 462(콘크리트구조물보수), 477(콘크리트구조물보수)	8	506(콘크리트농수로보수), 507(콘크리트구조물보수), 522(콘크리트구조물보수), 563(콘크리트구조물보수), 576(콘크리트구조물보수), 577(콘크리트구조물보수), 619(콘크리트구조물보수), 642(콘크리트구조물표면보호보수)	8			1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211(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246(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288(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3			507(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1	4
								110(토목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140(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222(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233(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511(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5	5
				59(수중노출콘크리트구조물방식보수보강)	1			596(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1	2
								330(수리시설콘크리트구조물방식보수)	1	1
			02. 보강	295(콘크리트구조물보강), 317(콘크리트구조물보강), 351(콘크리트구조물보강), 381(콘크리트구조물보강), 403(콘크리트구조물보강), 404(콘크리트구조물보강), 406(콘크리트구조물보강), 417(콘크리트구조물보강), 535(수중구조물보강)	9					9
				110(토목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140(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222(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233(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511(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5	596(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1			6
			03. 표면보호	191(콘크리트표면광택발현), 274(콘크리트 표면처리), 345(콘크리트구조물표면보호), 365(콘크리트구조물표면보호), 432(콘크리트구조물표면보호)	5	550(콘크리트구조물표면보호)	1			6
			04. 누수방지	178(누수보수)	1					1
		02. 방식	01. 수리구조물방식	330(수리시설콘크리트구조물방식보수)	1					1
				86(해상구조물방식)	1					1
				89(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1					1
				544(오수하수시설구조물방식)	1					1
		03.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B 건축	01. 건축계획 및 관리	01. 설계 및 프로그램	01. 건축소프트웨어	79(건축설계소프트웨어)	1					1
			02. 거푸집연직도관리			625(거푸집연직도관리)	1			1
		02. 기타 건축계획								
	02. 가설시설물	01. 안전가시설	01. 안전가시설			626(안전가시설)	1			1
		02. 기타 가설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03. 조경	01. 옥상녹화	01. 옥상녹화	305(옥상잔디녹화)	1	580(옥상녹화지반조성)	1			2
		02. 기타 조경								
	04. 기초	01. 기초다짐 및 지정	01. 블럭기초	7(중공블럭기초)	1					1
		02. 기초 보강	01. 기초보강	217(기둥플레이트보강)	1	548(철근콘크리트기초보강), 629(기초보강과복원), 632(지하확장가설공법), 655(기초전단머리보강)	4			5
			02. 침하구조물복원			470(침하구조물 복원)	1			1
		03. 기타 기초	01. 우물통기초	54(우물통기초시공), 57(우물통기초보수)	2					2
			02. 집수정			452(집수정시공)	1			1
	05. 철근콘크리트	01. 콘크리트 제조 타설	01. 콘크리트 수화열제어	350(매스콘크리트수화열제어), 353(건축기초매스콘크리트수화열제어), 509(매스콘크리트수화열제어), 460(기초매스콘크리트수화열제어)	4	546(매스콘크리트수화열제어), 618(매트기초균열제어), 660(매스콘크리트단열보온양생)	3			7
			02. 고성능콘크리트	454(고강도콘크리트수직부재내화), 264(준유동콘크리트제조)	2	578(콘크리트구조물표면탈수), 609(고강도콘크리트수직부재내화), 617(콘크리트내화), 647(콘크리트내화)	4			6
			03. 특수콘크리트			591(해안매립지지하구조물용콘크리트제조)	1	639(해양콘크리트)	1	2
		02. 철근 가공 및 조립	01. 철근이음	30(철근이음), 174(철근이음), 179(철근이음), 296(철근이음)	4	569(철근이음)	1			5
			02. 철근배근	362(철근배근)	1	478(나선철근망제작)	1			2
		03.거푸집	01. 슬립거푸집	18(슬립폼)	1					1
			02. 철근트러스거푸집	493(철근트러스합판거푸집)	1	534(철근트러스합판거푸집), 649(철근트러스합판거푸집)	2			3
			03. 일체식거푸집	281(벽체바닥동시타설거푸집), 457(유니트화된 바닥보거푸집), 515(일체식거푸집)	3					3
			04. 저소음거푸집			583(저소음슬래브거푸집),621(드롭형슬래브거푸집)	2			2
			05. 마감겸용거푸집	158(마감겸용거푸집), 280(마감겸용거푸집)	2					2
			06. 특수거푸집	36(고강도모르터거푸집), 80(요철형거푸집), 85(역타설현수거푸집), 98(대형판거푸집), 386(스티로폼거푸집)	5					5
			07. 거푸집자재	116(슬리브부식방지), 163(거푸집고정장치)	2					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04. 철근콘크리트 골조	01. 중공슬래브			628(중공슬래브)	1			1
			02. 와이어매쉬슬래브	5(와아어매쉬슬래브)	1					1
			03. 무거푸집기둥	505(무거푸집콘크리트기둥)	1					1
		05. 복합 구조체	01. 합성벽체	282(벽체접합)	1					1
			02. 합성보	208(프리플렉스합성빔(건축))	1					1
		05. PC(Precast Concrete)	01. PC계단	439(PC계단)	1					1
			02. PC슬래브			638(PC슬래브)	1			1
		06. 기타 철근콘크리트				641(플랫 슬래브)	1			1
	06. 철골	01. 철골 가공 및 조립	01. 무지보하향골조			537(무지보하향골조)	1			1
			02. 구조체접합	235(보기둥접합), 292(보기둥접합), 318(강재볼트이음)	3					3
		02. 데크플레이트	01. 데크슬래브	51(데크슬래브), 94(데크슬래브), 115(데크슬래브), 176(데크슬래브), 393(데크슬래브)	5	604(트러스데크)	1			6
		03. 철골 내화 피복뿜칠, 방식	02. 강구조물방식	273(강구조물방식), 416(강구조물방식)	2					2
		04. 복합 구조체	01. 합성보	133(하이브리드 빔), 418(합성보(건축)), 424(합성보(건축))	3	541(합성보(건축)), 661(철골합성보)	2			5
			02. 합성벽체	313(합성벽체)	1					1
			03. 합성기둥	392(CFT기둥접합), 473(CFT기둥접합)	2	631(합성기둥)	1			3
		05. 철골계단	01. 철골계단	410(철골계단)	1					1
		06. 기타 철골								
	07. 조적	01. 벽돌	01. 벽돌앵커	198(벽돌앵커설치)	1					1
		02. 블록	02. 블록조적	463(콘크리트블록조적)	1					1
		03. 기타 조적								
	08. 마감	01. 석공	01. 건식석재설치	75(건식석재용앵글제작), 169(건식석재설치), 177(석재오픈조인트시공)	3	481(건식석재설치), 586(건식석재 설치)	2			5
			02. 석재 가공	218(석재고운다듬)	1					1
		02. 타일								
		03. 목공								
		04. 금속	01. 트랜치	329(트랜치)	1					1
		05. 유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06. 지붕홈통	01. 지붕구조체시공	146(지붕구조체시공)	1					1
		07. 미장	01. 온돌바닥	29(온돌바닥),91(온돌바닥),141(온돌바닥),149(바닥마감), 284(온돌바닥),472(온돌바닥)	6					6
		08. 창호	01. 문틀설치	375(탈부착식문틀설치)	1					1
			02. 유리창호설치			471(3중유리창틀설치), 558(이중창호설치)	2			2
		09. 도장	01. 차열도장	338(차열도장)	1					1
		10. 수장	01. 건식벽체	358(건식벽체)	1	489(건식벽체)	1			2
		11. 단열	01. 벽단열재	138(벽단열재)	1					1
			02. 욕실단열	451(욕실단열)	1					1
			03. 외단열			465(외단열), 508(외단열), 659(외벽건식단열)	3			3
		12. 건축물세척	01. 건축물세척			500(건축물세척)	1			1
		13. 기타 마감								
	09. 방수	01. 일반방수	01. 도막방수	107(우레탄방수), 120(방수재료), 349(도막방수), 394(아스팔트도막방수), 422(도막방수)	5	527(도막방수), 560(도막방수)	2			7
			02. 시트방수	39(시트방수), 326(시트방수)	2	536(시트방수)	1			3
		02. 복합방수	01. 복합재료방수	102(복합방수), 154(복합방수), 204(복합방수), 234(복합방수), 347(복합방수), 516(복합방수), 413(복합방수)	7	476(복합방수), 599(복합방수)	2			9
		03.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01. 지하외방수	367(지하외방수),376(지하외방수), 467(지하외방수)	3	520(지하수조벽체방수), 587(지하외방수), 634(지하외방수)	3			6
			02. 콘크리트구체방수	239(콘크리트구체방수), 334(콘크리트구체방수), 396(콘크리트구체방수)	3					3
			03. 벽체결로방지	253(벽체결로방지)	1					1
			04. 모르터방수	298(수지모르터방수)	1					1
			05. 옥상단열방수	323(옥상단열방수보수)	1					1
	10. 특수 건축물	01. 초고층 건축물	01. 변위조정			593(초고층빌딩변위조정)	1			1
		02. 쉘, 돔, 아치형 구조물	01. 지붕구조			663(지붕구조)	1			1
			02. 케이블시공			667(케이블시공)	1			1
		03. 비정형 구조물	01. 경사구조물가설			608(경사구조물가설)	1			1
		04. 복합구조물	01. 조립식구조물	240(조립식욕실설치), 258(스틸하우스), 435(건축모듈러유닛)	3					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05. 내진구조물	01. 제진공법			611(제진공법), 653(하이브리드 제진장치)	2			2
		06. 친환경 건축물	01. 태양광조명			579(태양광조명), 658(주광조명시스템)	2			2
		07. 기타 특수 구조물								
	11. 해체	01. 발파식 해체								
		02. 기계식 해체								
		03. 기타 해체								
	12. 보수보강	01. 건축 보수보강	01. 내벽면처리	268(공동주택내벽면처리)	1					1
			02. 내력보강	450(건축물내력보강)	1					1
		02.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03. 기타 보수보강								
C 기계설비	01. 건설기계	01. 건축기계설비	01. 수송시스템	84(건설현장수송시스템)	1	670(수송용대형리프트)	1			2
			02. 굴삭안정액관리	123(굴삭안정액관리)	1					1
		02. 공기조화/냉난방 설비	01. 배기	166(공조덕트), 245(주방배기), 337(기류유인팬)	3					3
			02. 공조설비제어	301(공조설비제어)	1					1
			03. 급기			514(공동주택급기)	1			1
		03. 소방설비								
		04. 배관설비	01. 상수배관							
			02. 하수배관			623(하수 이중관배관)	1			1
			03. 냉,온수배관			485(스테인레스관 배관), 633(온도유량 제어 절수형 배관)	2			2
			04. 배관이음	129(파이프 배관)	1	664(맞대기 이음)	1			2
		05. 파쇄설비								
		06. 순환골재 제조설비	01. 순환골재제조	121(벽돌용순환모래제조), 126(순환골재제조), 261(순환골재 제조), 436(순환잔골재제조)	4	486(순환골재제조), 525(순환잔골재제조)	2			6
			02. 모래세척	26(모래세척)	1					1
			03. 파쇄골재제조			528(원석파쇄골재제조)	1			1
			04. 순환토사제조			590(순환토사 제조)	1			1
		07. 기타 건설기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만료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핵심분야)	핵심분야 건수	유효신기술 건수 (보조분야)	보조분야 건수	신기술 총계
	02. 플랜트	01. 신산업플랜트설비								
		02. 복합플랜트설비								
		03. 기타 플랜트								
	03.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01. 계측 및 제어설비								
		02. 자동화 시스템설비								
		03. 기타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04. 환경기계설비	01. 환경기계설비	01. 매립지환경개선	302(매립지내부환경개선)	1	630(매립가스 증산기술)	1			2
		02. 폐기물처리설비	01. 선별장치	161(매립쓰레기선별장치)	1					1
			02. 소각재처리	311(소각재용융처리)	1					1
		03. 기타 환경기계설비								
※ 현재 보호기간중인 신기술도 시간이 경과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므로 날짜별로 신기술 목록이 상이할 수 있음					489	계	183		14	686

7. 신기술관련 담당부서 안내



7 신기술관련 담당부서 안내

주요 역할	담당기관	전화번호 (팩스)
신기술 업무 총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www.mltm.go.kr)	02-2110-6298, 6299 (Fax : 02-504-6127)
신기술 심사 및 제도 운영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www.kictep.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 및 건설신기술 사이버전시관 (ct.kictep.re.kr)	031-389-6481~5 (Fax : 031-381-4994)
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02-516-2490 (Fax : 02-516-5090)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담당부서 안내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1~5)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1600) 하나은행 4층

- 약도



· 지하철 이용시

: 4호선 평촌역 2번 출구(70m, 하나은행 건물 4층)

· 공항버스 이용시

: 김포공항(청사 7번 승강장) → 범계역 → 평촌역 하차

: 경기공항 리무진 버스(김포↔범계, 약 1시간 소요)

· 자가용 이용시

: 서울 외곽순환도로(서울) → 평촌IC → 농수산물시장에서 우회전 → 한림대병원 → 안양시청 사거리에서 우회전 → 이마트 전방 하나은행

: 서울 외곽순환도로(인천) → 평촌IC → 농수산물시장 삼거리에서 좌회전 → 한림대병원 → 안양시청 사거리에서 우회전 → 이마트 전방 하나은행

안내말씀

항상 건설기술의 발전에 힘쓰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술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
한국건설신기술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 전화 : 02-2110-6298, 6299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 전화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 주소 : 신창빌딩 4층 기업은행B/D 6층

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전화 : 02-516-2490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7-12 논현빌딩 401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감찰팀

전화상담 : TEL : 02)2110-8045 FAX : 02)504-9146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부정행위 신고하기

건설신기술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원 건설신기술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하기』 창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건설신기술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ct.kictep.re.kr) 『부정행위 신고하기』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신창빌딩 4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전화상담 : TEL : 031)389-6481~5 FAX : 031)381-4994